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2018. 8

황현아·백영화·권오경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머 리 말

2011년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보험업법에 도입된 이래 지난 7년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누적되어 왔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해 제재 대상 사례들도 다양하였는데, 각각의 사례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를 보면 실제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에 포섭되는 위반행위의 유형이 너무도 다양함에 비해 그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및 이에 대한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법령상 과징금 산출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해 외국의 법제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세분화 하는 방안 및 보험금 부지급을 별도 규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가 보험규제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8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9
1. 연구 배경 / 9
2. 선행연구 / 10
3. 연구 내용 / 11

Ⅱ.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 / 13
1. 과징금 제도 개관 / 13
2.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 / 20

Ⅲ.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 31
1.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의의 / 31
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 및 제재 사례 / 47
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 / 64

Ⅳ.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 76
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 76
2. 은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 85
3.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 88
4.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 92
5. 시사점 / 96

Ⅴ. 기초서류 위반 관련 주요국의 사례 / 98
1. 개관 / 98
2. 일본 / 98
3. 미국 / 102
4. EU 및 유럽국가 / 112
5. 시사점 / 118

목차

Ⅵ.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120
1.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 120
2. 개선방안 / 127

Ⅶ. 결론 / 151

| 참고문헌 | / 153

| 부록 | / 156

표 차례

〈표 Ⅱ-1〉 과징금, 과태료, 벌금, 몰수·추징의 구별 / 17
〈표 Ⅱ-2〉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유형 / 18
〈표 Ⅱ-3〉 보험업법 제196조 / 21
〈표 Ⅱ-4-1〉 과징금 부과사유(보험회사의 법 위반행위) / 22
〈표 Ⅱ-4-2〉 과징금 부과사유(임직원 및 설계사의 법 위반행위) / 23
〈표 Ⅱ-5〉 검사 및 제재 규정상 과징금 산정 방식 / 26
〈표 Ⅱ-6〉 부과기준율표 / 27
〈표 Ⅱ-7〉 세부평가기준표 / 27
〈표 Ⅲ-1〉 보험상품 규제 연혁 / 32
〈표 Ⅲ-2〉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후 기초서류 관련 규제 변화 / 33
〈표 Ⅲ-3〉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관련 규정 / 33
〈표 Ⅲ-4〉 사업방법서 필수기재사항 / 36
〈표 Ⅲ-5〉 보험약관 필수기재사항 / 38
〈표 Ⅲ-6〉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필수기재사항 / 39
〈표 Ⅲ-7〉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부과기준율 / 43
〈표 Ⅲ-8〉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 44
〈표 Ⅲ-9〉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 44
〈표 Ⅲ-10〉 과징금 산정 방식 비교 / 45
〈표 Ⅲ-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사례 / 48
〈표 Ⅲ-12〉 보험금 부지급 사례(사례 37)의 제재 대상 사실 / 53
〈표 Ⅲ-13〉 보험금 부지급 사례의 미지급 금액과 과징금 비교 / 55
〈표 Ⅲ-14〉 사례 14 과징금 산출 방식 / 56
〈표 Ⅲ-15〉 보험금 부당삭감 사례의 부당삭감금액과 과징금 비교 / 58
〈표 Ⅲ-16〉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사례 과징금 비교 / 60
〈표 Ⅲ-17〉 사례 12 과징금 산출 방식 / 63
〈표 Ⅲ-18〉 현행 규정에 따른 사례 12 과징금 산출 방식 / 64
〈표 Ⅳ-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 77
〈표 Ⅳ-2〉 공정위 소관 기타 법령상 과징금 제도 / 78

표 차례

〈표 Ⅳ-3〉 하도급법상 과징금 산정 방식 / 84
〈표 Ⅳ-4〉 은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 86
〈표 Ⅳ-5〉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89
〈표 Ⅳ-6〉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90
〈표 Ⅳ-7〉 방통위 소관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 93
〈표 Ⅴ-1〉 일본과 한국의 기초서류 관련 규제 비교 / 100
〈표 Ⅴ-2〉 Unfair Claim Practices 유형 / 104
〈표 Ⅴ-3〉 모델법상 Unfair Trade Practices 유형 / 105
〈표 Ⅴ-4〉 뉴욕주 보험법상 불공정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 108
〈표 Ⅴ-5〉 뉴욕주보험법상 Unfair Trade Practices 유형 / 110
〈표 Ⅴ-6〉 영국 ICOBS상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 116
〈표 Ⅵ-1〉 기초서류 종류 및 각 필수기재사항 / 128
〈표 Ⅵ-2〉 단계별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규제 / 130
〈표 Ⅵ-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사례 유형 / 131
〈표 Ⅵ-4〉 유형화 방안 / 136

그림 차례

〈그림 Ⅲ-1〉 미지급 보험금 원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 67
〈그림 Ⅲ-2〉 부당삭감 보험금 원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 68
〈그림 Ⅲ-3〉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기타 보험금 미지급의 과징금비율 비교 / 69
〈그림 Ⅲ-4〉 A유형과 B유형 과징금 규모 비교 / 73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Scheme to Basic Document Compliance Obliga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obligation to observe matters entered in basic documents('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2011, sanction cases for breach of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past seven years.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covers diverse types of action, as a result the cases were also varied. In some cases, the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it did not match the severity of the actual violation. This result is because the penalty surcharge amount is calculated by a single criterion, which is 50/100 of the annually earned premiums of the relevant insurance contracts despite the diversity of types of violation.

In this report, we analyzed the cases of penalty surcharge imposed for basic documents violation, and examined the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and penalties. In addition, we studied the assessment method of money penalty amount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current broad and ambiguous 'basic document compliance obligations' clause needs to be improved into an clear and unambiguous wording. As well, types of violation should be subdivided and the payment refusal of insurance benefit needs to be regulated in separate way.

It is to be hoped that this report serves as 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aso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Korean insurance regulation system.

요 약

Ⅰ. 서론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너무도 다양한데 비해 과징금은 '해당 보험계약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부과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규정 및 제재 사례를 살펴보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

■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관계법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금으로서, 형벌인 몰수·추징·벌금,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구별됨

■ 보험업법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사유는 크게 ① 모집관련 준수사항 위반, ②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 ③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으로 구분됨

■ 과징금 부과의 근거 규정은 보험업법 제196조이고,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인『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및『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법정부과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과됨

○ 법정부과한도액에 위 각 고시에서 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뒤, 가중 및 감경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결정함

Ⅲ.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1.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의의

■ 기초서류란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로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의미함

○ 기초서류에 대한 규제는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임

○ 보험상품 규제는 인가의제제도(2003년 이전), 신고-보고제도(2010년 이전)를 거쳐 현재는 신고-자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인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시 도입된 것으로, 보험상품 자유화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의 의미를 가짐

○ 또한, 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행 관련 불공정행위 대한 제재 필요성도 상당히 고려되었음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비금전적 제재와 함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 및 제재 사례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 46건을 수집·조사하였음

■ 제재 유형에는 보험금 미지급{19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15건, 기타 4건)}, 보험금 부당 삭감(9건),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6건), 보험계약 부당해지(4건), 상품구성 기준 및 보험료 비중 위반(7건), 기타 등이 있었음

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

■ 사례 분석 결과,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은 (i) 위법행위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문제와 (ii) 법치국가 원리 준수여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위법행위 경중과의 불균형) 과징금 규모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산출·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제재 사례에서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음

○ (동일유형·동일사유)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이라는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다수의 보험사들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금 규모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실제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났음

○ (동일유형·상이사유) 보험금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비교한 결과, 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가 상해 및 질병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에 비하여 미지급 보험금 규모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 (상이유형)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과 기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비교해 보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적게 산정된 반면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높게 산정되었음

■ 한편,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그 자체로서 금지행위의 내용적 요건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Ⅳ.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 (공정위 소관법령)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대부분의 공정위 소관법령은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부과하는 반면, 하도급법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부과하고 있음

○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민사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공적 규제를 가하고 있음

○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금융관계법령)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은 과징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과징금 부과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업법과는 큰 차이가 있음

○ 은행법상 과징금은 자산운용 방법 및 한도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과징금 금액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됨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공시위반 과징금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으로 구별되는데, 과징금 부과대상 자체가 제한적이고, 공시위반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5% 보고의 경우 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방통위 소관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통위 소관법령의 경우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시사점) 이상의 법령들을 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또는 '위반금액'을 기준으

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해쳐 소비자 전체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개별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은행법상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Ⅴ. 기초서류 위반 관련 주요국의 사례

■ (일본) 일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내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임원해임 등 비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2005년 일본 보험금 지급거절 사건 당시 금융청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에게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처분을 부과한바 있음

■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Unfair Trade Practices(UTP) 및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UCSP)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음

○ NAIC는 관련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채택하여 각 주의 보험법에 반영하고 있음

○ 뉴욕주 보험법도 UTP 및 UCSP 유형을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금융청장이 '불공정한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및 관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정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EU 및 유럽국가) 유럽의 경우도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규정을 도입한 예는 없

었고, 다만 영국의 경우 FCA가 제정한 보험업무행위지침(ICOBS)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공정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을 금지하고 있었음

○ ICOBS 규정상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FC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따라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해외사례들을 보면,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유례가 없음

○ 유일하게 일본의 경우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을 '중요한 사항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음

○ 비교법적 관점 및 법 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구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모든 사항을 구체화 할 수 없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를 시도하고, 구체화 할 수 없는 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충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Ⅵ.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1.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 개선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개선방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첫째, 기초서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 자체는 당위적인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제재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 둘째,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너무도 다양한데, 이처럼 다양한 행위에 대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과징금 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제재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임

○ 셋째, ‘연간 수입보험료’는 ‘매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적절하나,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부적합함

○ 넷째, 과징금 부과는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나, 현행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다섯째, 최근 금융관련법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일괄 상향조정된바,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개선방안

■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원칙 규정으로서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 규정은 별도로 도입하여야 함

○ 보험업법 제127조의 5 이하에 신설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이 가능함

■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 유지, 계약 이행의 단계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함

○ 현행 보험업법은 상품개발, 광고 및 모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나, 상품의 구성, 보험료 산출 및 징수, 보험계약 유지 및 운영, 보험금 청구 시 업무 처리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그간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위와 같은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포괄 규정의 기능을 해 왔으나, 규제가 필요한 행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명확성 원칙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제재 대상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보충 규정을 도입하되, 미국과 같이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이라는 요건을 두거나, 일본과 같이 ‘기초서류 중 특별히 중대한 사항 위반’으로 제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보험금 부지급 문제는, 먼저 이를 공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공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별도의 명확한 근거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지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것은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일이므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적 규율이 불가피하다면,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괄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제재 대상이 되는 보험금 부지급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에 준하는 정도의 고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처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보험금 부지급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되, 과징금 금액은 실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미지급 보험금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함

■ 끝으로, 행위 유형에 따라,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개별 보험계약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위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부과비율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Ⅶ. 결론

기초서류 준수의무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규제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1. 연구 배경

과징금 제도는 행정제재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제재 대상자에게 형사처벌 못지않은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업법 역시 보험회사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활용하고 있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그 중 하나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은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서류 준수의무는 보험업법상 단일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경미한 계산상 실수부터 고의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지 않는 과징금 액수가 산정·부과될 수도 있다. 위반행위는 과중한데 과징금이 과소하게 부과되거나,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그러한 과징금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뿐 아니라 과징금 제도의 본래적 기능인 위법행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특히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방송통신법 등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정한 과징금 부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관련 법령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한국법제연구원(2014)

한국법제연구원의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 제재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연구는 주요국의 금전제재의 특징을 검토·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업에 대한 금전제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 연구는 우리나라의 금융업 금전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으로, 과징금 도입 비율이 낮은 점, 금융업별 제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적절하게 혼용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과태료의 과징금 전환,[1] ② 과징금 상한 인상,[2] ③ 과징금 산정기준(산정방식) 개선,[3] ④ 과징금 기준금액(위반금액 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개선,[4] ⑤ 권리구제절차의 공정성 제고 방안[5]을 제시하고 있다.

나. 법제처 연구용역: 서울행정학회(2013)

서울행정학회의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전 부처 소관법령(130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과징금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금액의 합리성, 과징금 부과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검토

1) 시장·금융기관 건전성 보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임
2) 과징금의 상한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여 위법행위 억제력을 높이는 방안임
3) 과징금 산정방식 중 기본부과율은 근거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및 징벌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함
4) 기준금액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확대·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을 높이는 방안임
5) 준사법절차 도입 내지 행정감독청에 의한 권리구제절차 도입방안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과징금 부과 판단 기준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해당 과징금의 유형(경제적 이익 환수, 영업정지 갈음, 순수 금전제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징금의 유형에 부합하는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이 제도의 핵심 요소임에도 현행 법령들에서는 과징금 부과금액이 부적정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과징률[6]을 산정해보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규모에 역진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구조상 불공정성이 나타난다.

셋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해당 영업의 공익적 성격 및 그 중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한국증권법학회(2004)

한국증권법학회의 "금융규제법상 과징금 제도 개편방안"은 금융규제법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과징금 부과 범위 확대,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의 설정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내용 및 체계를 살펴보고, 특히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조사하여 위반행위의 유형과 실제 부과된 과징금을 비교·분석한다. 분석 대상 사례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사이트에서 검색된 46건이다.

과징금 부과기준의 대안 제시를 위해, 타 법령상 과징금 관련 규정 및 해외사례를

6) 1일 과징률=(1일 과징금의 금액)/(1일 매출액)

살펴본다. 이러한 사례들의 시사점을 토대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정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Ⅱ.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

1. 과징금 제도 개관

가.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過徵金)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관계법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금으로서, 주로 경제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불법적 이익을 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7] 금융관계법의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제재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8]

과징금 제도는 일본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1977년 5월 27일 개정된 일본의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제7조의2 및 제8조의3에서 위법 카르텔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카르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9] 우리나라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서 과징금 제도를 처음 도입[10]한 이후 1990년대 및 200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분야로 급속 확산되었다.

과징금은 일본(過徵金), EU 및 영국(Fine[11]), 독일(Bußgeld[12])에서도 주로 공정거래

7) 김동희(2007), p. 589

8) 참고로, 금융관계법상 제재는 영업상 제재, 신분상 제재, 금전상 제재로 구별되고, 과징금은 과태료와 함께 금전상 제재에 해당함

9) 박해식(2002), p. 13

10) 우리나라 최초의 과징금 제도는 정부의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그 가격인상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었음

11) EU의 Fine은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임. EU는 과

법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는 과징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행정규제 영역에서 벌금(Fine) 및 민사금전제재(Civil Money Penalty)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3]

나. 과징금의 유형 및 부과 목적

현재 과징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도입되어 있고 그 목적이나 규정방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①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②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및 ③ 순수한 금전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분류되고 있다.[14]

2013년 8월 기준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은 130건으로, 부당이익 환수 목적 과징금 13건,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97건, 순수 금전제제로서의 과징금 7건으로 분류된다.[15]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계법령상 과징금은 순수 금전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분류되고 있다.[16] 금융관계법령상 과징금이 순수 금전제재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들 과징금들이 대부분 부당이득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부과되는 유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7]

과징금 부과의 목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및 행정상 의무 위반 억지로 구분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징금 외에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 제도도 병행하고 있음

12) 독일의 Bußgeld는 EU의 Fine과 같은 개념인 것으로 보임

13) 미국의 Civil Money Penalty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제재로서,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포함하는 개념임

14) 정부 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 심사기준, 제2편 법령입안·심사의 세부기준, 제2장 실체기준. 10. 과징금 부분 참조(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 = 2232&astClsCd = 2018. 1. 4. 최종방문)
과징금의 유형에 관해서는 행정법 학계를 중심으로 보다 복잡한 논의가 전개된바 있으나(서울행정학회(2013) pp. 21~24)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크게 3가지 유형(부당이익 환수형, 영업정지 갈음형, 순수 금전제재형)으로 분류하기로 함

15) 서울행정학회(2013), pp. 24~30

16) 서울행정학회(2013), p. 30

1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IV.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함

최초 과징금 제도 도입 당시에는 부당이득 환수 목적이 주요하였으나, 이후 과징금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의 환수와는 관계없는 분야에도 과징금이 활용되기 시작하였고,[18] 현재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부당이득 환수와 동시에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다. 과징금과 다른 제재의 구별

1) 벌금 및 과태료와의 구별

행정법 위반에 대한 금전제재에는 과징금 외에도 과태료와 벌금이 있다. 벌금은 행정법 위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부과되는 재산형, 즉 형벌이다. 반면 과태료는 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제재이다.

벌금과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형벌로서의 벌금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 반면, 질서벌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것이다. 즉, 제재 대상인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벌금과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성격, 부과 주체, 불복 절차 등에 따라 구별되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의 존부나 규모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반면 과징금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에 그 기본적인 목적

18)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으로, 위 법은 명의신탁 금지 위반 시 명의신탁자 등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음(동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과태료와 다를 바가 없으나, 과태료의 경우 대개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현저히 큰 금액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도입된 것임. 이처럼 부당이득 환수나 영업정지처분 대체와 무관한 과징금 제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정부 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법령입안·심사의 세부기준, 제2장 실체기준. 10. 과징금 부분 참조;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32&astClsCd= 2018. 1. 4. 최종방문)

이 있어, 과징금 산정 및 부과 시 부당이득의 유무 및 그 규모를 고려하게 된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에서는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경제적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으로 금전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과징금이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은행법,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 등은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규제 위반이나 신용공여 한도 위반에 대해서 그 위반금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은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동일하나, 과태료가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것인 반면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영업허가의 취소, 정지에 상응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과태료와 과징금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몰수·추징과의 구별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추징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그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 처분을 의미한다.[19]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법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의 기능을 갖는 과징금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은 물론 그로 인한 이익의 여부 및 이익의 규모 등을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산정과는 구별된다.

19) 형법 제48조

〈표 Ⅱ-1〉 과징금, 과태료, 벌금, 몰수·추징의 구별

구분	과태료	벌금	몰수·추징	과징금
부과 대상	경미한 질서위반	범죄행위	범죄행위	행정법상 의무 위반
부과 주체	행정청	법원	법원	행정청
부과 금액	위반행위별 법정금액 (통상 소액)	위반행위별 법정금액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	매출액 또는 위반금액에 일정비율 가중/감경한 금액
불복 절차	이의신청 행정소송	형사소송	형사소송	이의신청 행정소송

3) 비금전제재와의 구별

금융관계법령상의 제재는 비금전제재와 금전제재로 구별되고, 비금전제재는 영업상 제재와 신분상 제재로 나뉜다.

영업상 제재는 금융기관의 영업 자체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①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인허가 취소), ②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영업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영업점 폐쇄), ④ 위법·부당행위의 중지, ⑤ 계약 이전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등이 있다.

신분상 제재는 임원(직원)에 대한 것으로서, ① 해임권고(면직), ② 업무집행정지(정직), ③ 문책경고(감봉), ④ 주의적 경고(견책) 등이 있다.

금전적 제재는 주로 금융기관에 부과되나 임원(직원)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다. 과징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제재 수단 중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표 Ⅱ-2〉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유형

<table>
<tr><th>유형</th><th colspan="2">내용</th><th>경중</th></tr>
<tr><td rowspan="10">영업상 제재</td><td colspan="2">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td><td rowspan="10">강
↑
↓
약</td></tr>
<tr><td colspan="2">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td></tr>
<tr><td colspan="2">영업점의 폐쇄</td></tr>
<tr><td colspan="2">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td></tr>
<tr><td colspan="2">위법부당행위의 중지</td></tr>
<tr><td colspan="2">계약이전의 결정</td></tr>
<tr><td colspan="2">위법내용 공표 게시요구</td></tr>
<tr><td colspan="2">기관경고</td></tr>
<tr><td colspan="2">기관주의</td></tr>
<tr><td rowspan="5">신분상 제재</td><td>임원</td><td>직원</td><td></td></tr>
<tr><td>해임권고</td><td>면직</td><td rowspan="4">강
↑
↓
약</td></tr>
<tr><td>업무집행정지</td><td>정직</td></tr>
<tr><td>문책경고</td><td>감봉</td></tr>
<tr><td>주의적 경고</td><td>견책</td></tr>
<tr><td rowspan="2">금전적 제재</td><td colspan="2">과징금</td><td></td></tr>
<tr><td colspan="2">과태료</td><td></td></tr>
</table>

라. 이중처벌금지 등 위반 문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법절차가 아닌 행정절차에 의해 사실상 벌금과 다름없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징금 부과는 행정권에 포함된 것으로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는 구별되므로, 형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0]

20) 헌재 2003. 7. 24. 자 2001헌가25결정.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i)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처벌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ii) 법원이 아닌 주무 행정기관(본 사안의 경우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은 다양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관한 사실 수집과 평가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결단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즉, 형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더라도, 양자는 각각 다른 목적과 근거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과징금과 다른 금전제재가 구별된다 하더라도 제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2009년 법제처·법무부를 중심으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여 과도한 중복 제재를 정비하고, 부과요건을 합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21] 위 제도 개선을 통해 과태료·과징금 이중부과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산정 등의 합리화 문제는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과징금과 벌금이 이론상 구별되기는 하나 양자가 사실상 중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특정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엄격한 입법 및 사법통제를 회피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식을 살펴보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강의 기준만을 법률에서 정한 후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 등에 위임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기준이 대부분 행정재량에 맡겨지는 문제점도 있다. 행정 목적상 포괄적인 과징금 부과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 체계 및 논리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본 보고서에서 주로 검토하게 될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는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경향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앞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였던 공정거래법 등의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과징금 제도 관련한 문제점들이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과징금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사유재산 침해 등 헌법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것이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액수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한 사법적 사후 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21) 법제처·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2009. 8. 26.)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총 159개의 법률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벌금(12개 법률), 과태료와 과징금(35개 법률), 과징금과 벌금(112개 법률) 등이 중복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된바, 이후 법제처는 위 법률을 정비하여 단순·경미한 의무 위반은 벌금을 폐지하거나 중복되는 금전제재 중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53개 법률의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제도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음

어 왔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적 쟁점은 특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과연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부과되었는지 여부이다. 보험업법상 과징금 규정도 이러한 과징금 관련 헌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며 보험업법상 과징금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산출 기준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

가. 과징금 부과 근거: 보험업법 제196조 등

보험업법상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은 보험업법 제196조이다. 위 규정은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및 각 행위별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 및 부과비율을 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의견제출 절차, 이의신청 절차, 납부기한·징수·체납 등에 대해서는 은행법 규정이 준용되며,[22] 구체적인 부과 절차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22) 은행법 제64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64조의5(의견 제출), 제64조의6(이의신청), 제64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64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표 Ⅱ-3〉 보험업법 제196조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5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3. 제9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3의2. 제105조 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10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5. 제10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의2. 제1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1.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98조, 제10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 사유

과징금 부과 사유는 크게 ①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②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 ③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으로 구분된다.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은 다시 보험회사의 의무 위반(허위·과장광고, 특별이익제공, 무자격자 모집위탁)과 임직원 및 설계사의 의무 위반(설명의무 위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모집행위, 허위·과장·부실설명)으로 구분된다.

〈표 Ⅱ-4-1〉 과징금 부과사유(보험회사의 법 위반행위)

구분	근거 조항[23]	관련조항	행위	법정부과한도액	
				기준금액	부과비율
모집 관련 준수 사항 위반	1	95조의4	모집광고관련 준수사항 위반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50%
	2	98조	특별이익제공금지	특별이익 제공 대상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100%
	3	99조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50%
자산 운용 관련 규제 위반	3의2	105조	비업무용부동산취득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	30%
	4	106조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	30%
	5	106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	100%
	6	106조	자회사 발행 주식 등 소유한도 초과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100%
	6의2	110조	편법적 자금지원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 장부가액	30%
	7	111조	대주주와 거래제한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 장부가액	100%
기초 서류 관련 의무 위반	8	127조	기초서류 신고의무 위반	해당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50%
	9	127조의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10	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위반		
	11	131조	기초서류 변경명령 등 위반		

23)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의 각호

〈표 Ⅱ-4-2〉 과징금 부과사유(임직원 및 설계사의 법 위반행위)

구분	근거 조항	관련조항	행위	과징금 상한	
				기준금액	부과비율
모집 관련 준수 사항 위반	제2항	95조의2	설명의무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50%
		96조①	통신수단 이용 모집·철회·해지 관련 준수사항		
		97조①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 관련 금지사항		

다. 과징금 산정 방법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일정 비율('부과비율')을 곱하여 그 상한을 정하고,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된다.[24]

1) 과징금 산정 기준: 기준금액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① 위반금액(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과 ②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또는 연간 수입보험료(모집관련 준수사항 위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로 구분된다.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금지되는 신용공여액 등 위반행위에 대한 금액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이다. 이때 위반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은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의 정도·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위반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와는 비례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부당이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과징금은 부당이득 박탈적 성격보다는 순수한 제재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4) 보험업법 제196조 제4항, 은행법 제65조의4 제1항

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또는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얻은 수익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부당이득의 규모와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수입보험료란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전액을 의미하며, 일반 회사의 매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25] 연간 수입보험료란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계약에 기하여 1년간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의미하는데, 수년에 걸쳐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가장 금액이 높은 때를 기준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단순한 계산상 오류와 같이 경미한 법 위반행위로 큰 이득을 얻은 경우에 지나치게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6]

2) 과징금 상한: 법정부과한도액=기준금액×부과비율

과징금의 상한액인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정해진다. 부과비율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중 광고 관련 규제 위반은 부과비율이 50%인 반면, 특별이익제공의 경우에는 부과비율이 100%이다. 부과비율이 높을수록 그 행위의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4월 보험업법 개정 전에는 일반적으로 20%의 부과비율이 적용되었고, 특별이익제공의 경우에는 50%,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초과의 경우에는 10%의 부과비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금융관련법령상 부과되는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어서 징벌·제재효과가 부족하고, 방통위·공정위 등 타 부처에 비해서도 부과금액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이에 금융위원회

25) 수입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도 하며,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사고발생확률과 예정이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보험료인 '순보험료', 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보험료인 '부가보험료' 등이 있음

26)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III.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부분에서 상세히 검토함

는 금융 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하기로 하였다.[27]

위와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상 과징금의 법정부과한도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보험업법상 과징금 부과비율도 인상되었다. 현재는 일반적인 경우 50%의 부과비율이 적용되고, 특별이익 제공, 자회사 부당지원, 편법적 자금지원 등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는 100%의 부과비율이 적용되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30%가 적용된다.

3) 기본과징금 산정(법정부과한도액×부과기준율) 및 가중·감경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부과한도액에 그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자에게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 및 제재 규정'이라 함)은 금융업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위 규정 제20조 및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험업법에 따른 과징금뿐 아니라 다른 금융관련법령상 과징금 부과 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일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검사 및 제재 규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해서는 ① 먼저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및 부과비율에 따라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고, ② 그 법정부과한도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산정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③ 개별

2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5)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내용"

가중 및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하고, ④ 개별적인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Ⅱ-5〉 검사 및 제재 규정상 과징금 산정 방식

순서	산정 항목	산정 방법		내용
1	법정부과한도액	기준금액[28]×부과비율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및 부과비율에 따라 산정함
2	기본과징금	법정부과한도액×부과기준율[29]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 차등 적용
3	가중 및 감경한 조정 후 과징금	가중	부당이득금액과 기본과징금 차액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또는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과 기본과징금의 차액	보험회사 특별이익 제공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또는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감경	기본과징금의 30% 이하	감독기관 인지 전 자발적 시정·치유, 자진신고, 적극적 검사협조 등을 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이하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 이하	공적이 있거나 경영실태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4	부과과징금 결정	일정비율 감액[30] 또는 과징금 부과 면제		대상자의 과징금 부담 능력, 경영개선조치여부 등 참고하여 과징금 부과

28)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 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함)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함(검사 및 제재 규정 별표2 3. 가 항)

29) 〈표 II-6〉 참조

30)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

〈표 Ⅱ-6〉 부과기준율표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3 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50%

〈표 Ⅱ-7〉 세부평가기준표

참작사항 \ 부과수준		비중	상(3점)	중(2점)	하(1점)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동
위반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동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동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동

자료: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검사 및 제재 규정은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19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전 규정에는 기본부과율[31]제도가 있었으나,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이 높을수록 기본부과율을 낮게 설정한 문제점이 있어 개정 규정에서는 기본부과율이 폐지되고, 법정부과한도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였다.

31) 종전에 적용되던 기본부과율은 다음과 같이 법정부과한도액이 높을수록 낮은 비율을 적용하였음

〈기본부과율표〉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 원 이하(1단계)	×7/10
2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2단계)	×7/20
2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3단계)	×7/40
200억 원 초과 2천억 원 이하(4단계)	×7/80
2천억 원 초과(5단계)	×7/160

〈산정례〉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 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7/10
2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2억 원×7/10 +(법정부과한도액 - 2억 원)×7/20
2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억 원×7/10 + 18억 원×7/20 +(법정부과한도액 - 20억 원)×7/40
200억 원 초과 2천억 원 이하	2억 원×7/10 + 18억 원×7/20 +180억 원×7/40 +(법정부과한도액 - 200억 원)×7/80
2천억 원 초과	2억 원×7/10 +18억 원×7/20 +180억 원×7/40 +1,800억 원×7/80 +(법정부과한도액 - 2,000억 원)×7/160

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이라 함)은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이다. 앞서 살펴본 검사 및 제재 규정 별표2가 일반규정이라면,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처럼 별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둔 것은 기초서류 관련 의무의 특수성 때문이다.[32]

정부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에 따라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도 최근 개정되었다. 검사 및 제재규정과 마찬가지로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에도 법정부과한도액이 높을수록 낮은 부과율을 적용했던 기본부과율 제도가 있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채택하였다. 다만 부과기준율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검사 및 제재규정과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등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건의를 하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위법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검사 및 제재규정 또는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통상 금융감독원이 부과 건의한 내용대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과징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만약

32) 기초서류 관련 의무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III.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부분에서 상술함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절차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33]

마. 형벌과 과징금의 병과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신용공여 한도 초과, 자회사 주식 취득한도 초과,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정상(情狀)에 따라 보험업법 제200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제202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벌칙과 보험업법 제196조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벌칙과 과징금 병과 대상인 위 4가지 경우는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시 부과비율이 100%인 매우 중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벌칙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중처벌 금지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이러한 병과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함으로써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입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4]

33) 은행법 제65조의7, 제65조의8

34) 정채웅(2017), p. 1009

Ⅲ.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1.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의의

가. 기초서류의 의의 및 관련 규제

1) 기초서류의 의의: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

보험업법은 기초서류의 의의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험업법 제5조에서 보험업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에 관하여 정하면서,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함)'라고 정함으로써, 기초서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기초서류란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보험상품은 형체가 없는 무형의 상품이고,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표와 같은 서류에 의해 그 계약의 내용이 구성되므로, 기초서류란 '보험상품(보험상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서류'라고 보는 것이다.[35]

보험업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원시 기초서류'라 한다.[36] 보험상품의 개발은 원시기초서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상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것을 포괄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이라 한다. 기초서류 변경에 대한 규제가 곧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이다.[37]

35) 정채웅(2017), p. 761
36) 이성남·김건(2003), p. 306
37) 성대규·안종민(2015), pp. 566~567; 정채웅(2017), p. 763

2) 기초서류 관련 규제의 연혁 및 현황

보험업법 제정 시에는 보험업 허가 시(원시기초서류 작성 시) 및 기초서류 변경 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인가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의제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신고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였다.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 명문으로 상품개발 시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담하되,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보고제도'를 채택하였다. 2010년 다시 법을 개정하여 일부 신고상품을 제외한 상품개발의 경우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개발토록 하는 '신고-자율제도'를 채택하였다.

〈표 Ⅲ-1〉 보험상품 규제 연혁

연도	제도	내용
2003년 이전	인가의제제도	원칙적으로 기초서류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하되, 판매 전 신고(File and Use), 판매 후 보고(Use and File), 보고 불요(No File)로 나누어 보험회사가 위 3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이행하면 인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실제 상품개발건수 중 약 96%는 판매 후 보고 또는 보고 불요 상품이었음)
2003년 이후 2010년 이전	신고-보고제도	상품개발 시 원칙적으로 사전에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감독당국이 정한 상품개발 기준에 부합하게 개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먼저 판매한 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2010년 이후	신고-자율제도	법률에서 정한 3가지 경우[38]에만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는 물론 사후 보고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제도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기초서류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그 대신 사후 감독이 강화되었는데,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규정도 이때 함께 도입되었다. 현재, 기초서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보험업 허가

38) 법령에 따라 도입되는 상품, 방카슈랑스 판매 상품, 보험계약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새로운 위험 보장, 정부 보험료 지원,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표준사업방법서나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저축성 보험 등))

신청 시 원시기초서류 제출 의무(보험업법 제5조), 보험상품 관련 기초서류 작성 및 신고의무(보험업법 제127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정 및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8조의2),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8조의3)으로 구성되고,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변경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법상 의무나 금융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표 Ⅲ-2〉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후 기초서류 관련 규제 변화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	2010년 보험업법 개정 후
• 인허가 신청 시 기초서류 제출의무(제5조) • 기초서류 변경 시 신고의무(제127조) • 기초서류에 대한 금감원의 확인(제128조)	• 인허가 신청 시 기초서류 제출의무(제5조) • (원칙) 기초서류 작성의무(제127조) (예외) 기초서류 변경 시 신고의무(제127조) (법령개정에 의한 의무보험 도입, 방카슈랑스 상품) • 금융위 요청 시 기초서류 제출의무(제127조) • 금융위의 기초서류 변경권고(제127조의2)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제127조의3) •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정·준수(제128조의2) •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제128조의3) • 금융위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제131조)

〈표 Ⅲ-3〉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관련 규정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

〈표 Ⅲ-3〉 계속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39]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통제·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험회사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Ⅲ-3〉 계속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 밑줄은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 저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임

나. 기초서류의 종류

1)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는 보험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사업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한 서류로서, 보험회사의 내부 기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40]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업 허가신청 시 제

39)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 제1항 관련)]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
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0) 이성남·김건(2003), p. 312

출하는 원시 사업방법서 필수기재사항(제2-3조의2)과 종목별 사업방법서 필수기재사항(제7-54조)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사업방법서 필수기재사항에는 지역, 보험종목, 보험목적의 범위, 점포, 보험금액과 보험기간, 보험계약 체결 절차, 보험료 수수 및 환급, 약관대출, 보험계약 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다. 사업방법서 작성 시 준수사항은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7-55조 내지 제7-58조).

〈표 Ⅲ-4〉 사업방법서 필수기재사항

제2-3조의2(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2) 보험약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 제2조 1호}.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여러 명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 사업방법서와 달리 보험계약자에게도 직접 그 효력을 미친다.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법(私法)인 상법 보험편이 적용되는데,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내용이 상법 보험편에서 정한 강행규정[41]과 상충되는 경우 그러한 약관은 무효이며, 편면적 강행규정의 경우 관련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무효가 된다(상법 제663조).[42]

한편, 보험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근거법령은 보험업법과 약관규제법이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약관의 일종인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거나,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되고(약관규제법 제6조,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약관규제법 제17조, 제17조의2).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약관 필수기재사항(제7-59조)을 정하고, 보험약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3보험으로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제7-60조 내지 제7-63조). 보험약관 필수기재사항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약관에 일단 기재가 되면 그 내

41) 피보험이익 요건,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 보험사고의 불확정성 등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함

42)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용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표 Ⅲ-5〉 보험약관 필수기재사항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7 제3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기초율과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의미한다.[4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하는바, 산출방법서에는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보험업 감독규정 제7-64조).

43) 이성남·김건(2003)

〈표 Ⅲ-6〉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필수기재사항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약공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1) 기초서류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도입 배경

가) 개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간명하고 당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기초서류는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이므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위 규정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사후규제 강화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도입 당시 주된 제재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이었다.

나) 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른 사후규제 강화

먼저, 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른 사후규제 강화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0년 보험업법이 개정되기 전,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신고의무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었다. 그런

데,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의무 위반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하는 것이 법리상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고,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보험상품 자유화 방침에 따라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요구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시 보험상품 자유화와 함께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명문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하되, 그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법 개정 당시 논의의 초점은 제재보다는 보험상품 자유화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무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경위'를 보면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관련 조항으로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7조의2,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을 열거하고 있고,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관한 제127조의3의 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면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도입된 2010년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상품 자율화, 즉 규제완화를 주된 목표로 한 것이고, 그 대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을 적정하게 작성하고, 스스로 작성한 기초서류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필요성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자체는 보험상품 자유화라는 규제완화의 틀에서 안전장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제도 도입 전후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필요성이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규정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제재의 필요성이 보험상품 자유화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 추진 당시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기초서류 준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부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Unfair Insurance Practice)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한다는 점을 밝히며, 일본의 경우도 고의적인 보험금 부지급을 소비자의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보험사의 Unfair Insurance Practice로 간주하고 업무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44]

즉,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단순히 기초서류를 잘 지키라는 당부를 담은 원칙 규정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회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의 근거 규정으로 도입된 것이고, 주된 제재 대상은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부지급 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1) 제재 유형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가 보험업법에 도입되면서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규정도 함께 도입되었다.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34조).[45] 또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4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 10. 21),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45)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 209조 제4항 33호).[46],[47]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검사 및 제재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인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검사 및 제재 규정은 '금융업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바.항),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도의 기준'이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이다.

---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46) 제209조(과태료) ④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47) 다만, 보험업법 제209조 4항은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항인데, 여기에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 발기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는 점은 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과징금 산정 방식은 ① 기준금액 산정, ② 기준금액에 법정 부과비율을 곱한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③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본과징금 산정, ④ 가중 및 감경을 통한 조정 및 ⑤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 산정 방식 중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에 법정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 부과한도액을 산정하는 것(①, ②) 까지는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도 동일하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것도 동일하나, 이때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산정 방법이 다르다(③). 검사 및 제재 규정은 위반행위의 내용(동기, 방법), 위반행위의 정도(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회수를 고려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100%),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50%)로 구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반면,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표 Ⅲ-7〉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부과기준율

구분	고의	과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100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표 Ⅲ-8〉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대한 경우 - 매우 중대하거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메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표 Ⅲ-9〉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25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도 검사 및 제재규정과 마찬가지로 기본과징금을 기준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및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감경사유로는 ① 감독기관 인지 전 자발적 시정·치유(감경비율 30%), ② 감독기관 인지 전 자진신고 등 적극 협조(감경비율 30%), ③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감경비율 50%), ④ 공적[48]이 있거나 경영실태평가 1등급인 경우(감경비율 10%)가 있으며, 이는 검사 및 제재 규정과 동일하다. 가중사유는 ①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

48)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고, ②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다(가중비율 10%, 누적 한도 50%).

부과과징금 결정 시 과징금의 부과가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감경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는 검사 및 제재규정과 동일하다. 한편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사유 조정 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부당이득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과징금이 산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나, 감액은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되도록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표 Ⅲ-10〉 과징금 산정 방식 비교

항목		검사 및 제재 규정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기준금액×부과비율	좌동
기본과징금		법정부과한도액×부과기준율	좌동
		부과기준율: 중대성 정도에 따라 차등(100%, 75%, 50%)	**부과기준율: 고의 여부, 중대성 여부,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150%[49]~6.25%[50])**
조정[51]	가중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차액 가중	좌동
		특별이익 제공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 특별이익 제공 약속의 경우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 가중	과징금 부과처분 후 3년 내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처분 1회당 10% 가중, 누적 50%까지 가중 가능

49)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

50) 과실에 의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가 3개월 이하 계속된 경우

51)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표 Ⅲ-10〉 계속

항목		검사 및 제재 규정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
	감경	자발적 시정·치유(감경비율 30%)	좌동
		자진신고 등 적극적 검사협조(감경비율 30%)	
		재발방지조치(감경비율 50%)	
		공적 또는 경영실태평가 1등급(감경비율 10%)	
부과 과징금 결정		위반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부과가 제재목적 필요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과중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감액	좌동
		조정 후 과징금이 자본금과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 감액	**해당 없음**
		조정 후 과징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 가능(단,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좌동
		위반자의 사정에 비추어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미부과 가능	좌동
기타		금융거래자 피해 배상 시 배상액 범위 내에서 감액	좌동
		다른 제재조치(형벌, 과징금, 과태료)를 이미 받은 경우 해당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 미부과	좌동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경우 미부과 가능	좌동
		조정 후 과징금에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미부과 가능	좌동
		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등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경우 미부과 가능	**해당 없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과징금 미부과 가능	좌동

검사 및 제재 규정과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과징금 산정방식의 주된 차이점은 부과기준율 산정 방식에 있고,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이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 및 제재 사례

가. 사례조사

1) 조사의 필요성

기초서류 기재사항에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물론 부수적인 사항들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이론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위반 유형은 기초서류 내용만큼이나 다양하고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본 항에서는 실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분석하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을 파악해 보고, 각 유형별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사대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 및 각 유형별·사례별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도입된 이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사례 선정을 위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사이트[52]에서 제공하는 '제재내용공시 목록'에 기재된 2011. 1. 24.(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시행일)부터 2018. 4. 12.까지 제재 사례 중, 제재대상기관이 보험회사이고, 제재조치 내용에 과징금이 포함된 제재 사

52)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list.jsp)

례의 '제재내용 공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제재 사유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이 명시되어 있는 사례 46건을 수집하였다.[53]

〈표 Ⅲ-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사례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 대상 행위[54]	세부유형	과징금
1	2012. 1. 25.	한화손보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210백만 원
2	2012. 4. 18.	현대해상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보장성기준	128백만 원
3	2012. 6. 15.	동부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13백만 원
4	2012. 6. 15.	메리츠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부과면제
5	2012. 6. 26.	롯데손보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20백만 원
6	2012. 6. 26.	삼성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2백만 원
7	2012. 9. 14.	교보생명	사업방법서 위반	확정배당 원리금 부지급 (전산오류)	290백만 원
8	2012. 12. 14.	롯데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지급	6백만 원
9	2013. 2. 15.	AIA	사업방법서 위반	보험료 과다·과소 징수	221백만 원
10	2014. 3. 19.	알리안츠	산출방법서 위반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237백만 원
11	2014. 3. 26.	LIG손보	사업방법서 위반	보장성기준 위반	5백만 원
12	2014. 3. 26.	동부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820백만 원
			약관 위반	갱신보험료 서면 안내절차 위반	부과면제
13	2014. 3. 26.	흥국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3백만 원
14	2014. 8. 27.	ING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49백만 원

53)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의 제재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사이트에 게시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하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음

54) 동일한 내용이 2개 이상의 기초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결과제재사이트 게시 문건에 대표로 기재된 위반사항에 따라 하나로 기재함

〈표 Ⅲ-11〉 계속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 대상 행위[55]	세부유형	과징금
15	2014. 10. 22.	현대해상	약관 위반	보험료 과다 징수	61백만 원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부당산출	32백만 원
16	2015. 1. 22.	한화생명	약관 위반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금 부지급	24백만 원
17	2015. 9. 21.	미래에셋생명	약관 위반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금 부지급	5백만 원
18	2015. 12. 30.	흥국화재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4백만 원
19	2016. 1. 27.	AIA	약관 위반	보험료납입 최고업무 불철저	부과면제
20	2016. 2. 26.	KB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22백만 원
21	2016. 2. 26.	롯데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5백만 원
22	2016. 2. 26.	메리츠화재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17백만 원
23	2016. 2. 26.	현대해상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10백만 원
24	2016. 3. 2.	KB손보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과소산출	27백만 원
25	2016. 3. 2.	현대해상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부당산출	17백만 원
26	2016. 7. 14.	동부화재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34백만 원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과소산출	92백만 원
27	2016. 7. 26.	농협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9백만 원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과소책정	부과면제
28	2016. 10. 13.	라이나생명	약관 위반	보험계약 부당해지	1백만 원
29	2016. 11. 23.	DGB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부과면제
30	2016. 11.23	PCA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3백만 원
31	2016. 11. 23.	메트라이프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6백만 원
32	2016. 11. 23.	신한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5백만 원
33	2016. 11. 23.	처브라이프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1백만 원
34	2016. 11. 23.	흥국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6백만 원
35	2017. 5. 19.	교보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설명의무 위반	428백만 원

55) 동일한 내용이 2개 이상의 기초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결과제재사이트 게시 문건에 대표로 기재된 위반사항에 따라 하나로 기재함

〈표 Ⅲ-11〉 계속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 대상 행위[56]	세부유형	과징금
36	2017. 5. 19.	삼성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설명의무 위반	894백만 원
37	2017. 5. 19.	한화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설명의무 위반	395백만 원
38	2017. 9. 7.	삼성생명	약관 위반	이자지급업무 부적정/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계약특약 부당해지/ 보험금 지급 안내업무 불철저	7,365백만 원
39	2017. 10. 12.	흥국생명	약관 위반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금 부지급	7백만 원
40	2017. 10. 19.	ABL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설명의무 위반	245백만 원
41	2017. 10. 19	KDB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13백만 원
42	2017. 10. 19.	농협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2백만 원
43	2017. 10. 19.	동부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19백만 원
44	2017. 10. 19.	엠지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13백만 원
45	2017. 10. 19.	현대라이프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20백만 원
46	2018. 2. 6.	교보생명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미청구확약서 부당징구)/ 책임준비금 이자지급업무 부적정/ 보험료납입 면제업무 부적정/ 사고분할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413백만 원

56) 동일한 내용이 2개 이상의 기초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결과제재사이트 게시 문건에 대표로 기재된 위반사항에 따라 하나로 기재함

제도 도입 직후인 2012년에 실시된 검사 결과 총 8건[57]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사례에 대하여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6건은 상품구성기준 및 보험료 비중 관련 기초서류 기재사항 위반[58]에 관한 것이었고, 1건은 보험금 부지급에 관한 건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확정배당원리금 부지급에 관한 건이었다. 과징금 최고액은 2012. 9. 14. 확정배당원리금 부지급을 이유로 부과된 2억 9천만 원(사례 7)이었다.

2013년에는 1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있었고,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보험료를 과다 또는 과소 영수한 사례[59]로, 과징금 금액은 2억 2,100만 원이었다(사례 9).

2014년에는 총 6건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사례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고, 부과사유도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장성기준 위반, 공시이율 부적정, 갱신보험료 서면 안내절차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보험료 과다징수 등으로 다양해졌다. 과징금 최고 금액은 2014. 3. 26. 공시이율 부적정 산출을 이유로 부과된 8억 2천만 원이었다(사례 12).

2015년에는 총 3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있었고, 보험계약 부당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과 보험금 부당삭감 사례들이었다. 과징금 최고액은 한화생명에 부과된 2,400만 원(사례 16)이었다.

2016년에는 총 16건의 제재 사례가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보험금 부당삭감, 보험료 과소책정, 계약 부당해지 등이 주로 문제된 반면(사례 19~27) 2016년 하반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이 본격적으로 문제되었다(사례 29~34).다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과징금 부과 규모 자체는 1백만 원~6백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과징금 최고액은 2016. 7. 14. 보험금 부당삭감 및

57) 과징금 부과가 면제된 사례 4를 제외하면 7건임

58) 사례 2의 경우 상품구성기준 및 보험료 비중 외에 보장성 기준 관련 기초서류 기재사항 위반도 인정되었음

59)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영업보험료의 2%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할인이 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함으로써 과다 영수하고,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과소 영수한 점이 문제된 사례임. 다만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영수된 점은 이해가 되나, '과소'영수되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실관계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음

보험료 과소책정을 이유로 부과된 1억 2,600만 원이었다(사례 26).

2017년 및 2018년(4월 12일 기준)에는 총 12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있었고, 그 중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례가 9건을 차지했다.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 2017. 5. 19.에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대하여 4억 2,800만 원(사례 35), 8억 9,400만 원(사례 36), 3억 9,500만 원(사례 37)이 각각 부과되었고, 2017. 9. 7.에는 삼성생명에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역대 최고 과징금 금액인 73억 6,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사례 38), 2018. 2. 6.에도 교보생명에 4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사례 46).

다. 위반유형

1) 보험금 부지급(19건)

보험금 부지급은 기초서류 위반 사례 중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다.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하나인 보험약관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제재 총 19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으로, 총 15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있다(사례 14, 29~37, 40~43, 45).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약관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재해사망보험금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60] 그러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문제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 판결에 까지 이른 사안인바, 과연 보험회사가 고의적으로 약관의 기재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60) 사례 37의 "제재내용 공개" 기재 참조

〈표 Ⅲ-12〉 보험금 부지급 사례(사례 37)의 제재 대상 사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회사'라 함)는 1995. 11. 6. 이후 판매한 '무배당 베테랑 상해보험' 등 9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약'등 23개 특약에 각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하 '자살면책제한 조항'이라 함)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 검사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업무를 다음(1)~(3)*과 같이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 2011. 1. 24. ~ 2016. 5. 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315건에 대하여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120억 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8억 원(2016. 5. 31. 기준)등 총 158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 (1)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2) 보험금 지급 안내 부적정, (3)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첫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였던 2014년 ING생명 사례(사례 14)의 경우 '제재사실 공개' 내역에 과징금 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당시 감독당국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을 '과실에 의한 행위' 및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75%[61]로 정하였다. 이후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 사례에서는 '제제사실 공개' 내역에 과징금 산정방식이 명시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나 적용된 부과기준율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일부 사례의 경우 "(관련) 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라고 기재함으로써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을 '고의에 의한 행위' 및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62]

61) 개정 전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중대성 기준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의 위반행위", "경미한 위반행위"로 구별하고 있었음. 현행 규정은 중대성 기준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별하고 있음. 개정 전 규정상 "과실에 의한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규정상 "과실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음

한편, 다른 보험금 부지급 사례(사례 8, 16, 17, 39)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들이다. 사례 8의 경우 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소유·관리하지 않고 일회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일회적 이륜자동차 사용 중 상해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59건에 대해서 보험금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문제되었고, 2011. 1. 24. 이후 발생한 위반 건인 46건(미지급 보험금 5,500만 원)에 대하여 과징금 6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사례 16, 17 및 39의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해지권의 제척기관이 도과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였다.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식적으로는 "미지급 보험금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관한 과징금 기준금액인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적용된다. 따라서, 과징금 규모는 미지급 보험금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에 비례하게 된다. 위 19건의 사례의 미지급 보험금,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과징금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2)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100%)이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함

〈표 Ⅲ-13〉 보험금 부지급 사례의 미지급 금액과 과징금 비교

No	구분[63]	회사	미지급 보험금(원금)	과징금 기준금액[64]	과징금 부과금액[65]
8	기타	롯데손보	5,500만 원	(미기재)	600만 원
14	재해	ING생명	(미기재)[66]	357,239,592원	4,900만 원
16	기타	한화생명	1,700만 원	2억 7,800만 원	2,400만 원
17	기타	미래에셋생명	5,000만 원	(미기재)	500만 원
29	재해	DGB생명	5,500만 원	(미기재)	부과면제
30	재해	PCA	10억 9,500만 원	(미기재)	300만 원
31	재해	메트라이프	34억 2,800만 원	(미기재)	600만 원
32	재해	신한생명	17억 7,800만 원	(미기재)	500만 원
33	재해	처브라이프	4억 9,500만 원	(미기재)	100만 원
34	재해	흥국생명	12억 1,500만 원	(미기재)	600만 원
35	재해	교보생명	138억 원	(미기재)	4억 2,800만 원
36	재해	삼성생명	527억 원	(미기재)	8억 9,400만 원
37	재해	한화생명	120억 원	(미기재)	3억 9,500만 원
39	기타	흥국생명	1,800만 원	(미기재)	700만 원
40	재해	ABL생명	159억 원	(미기재)	2억 4,500만 원
41	재해	KDB생명	21억 8,700만 원	(미기재)	1,300만 원
42	재해	농협생명	17억 2,900만 원	(미기재)	200만 원
43	재해	동부생명	38억 8,700만 원	(미기재)	1,900만 원
45	재해	현대라이프	32억 7,200만 원	(미기재)	2,000만 원

63)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은 '재해', 기타 보험금 미지급은 '기타'로 표시함

64) 2011. 1. 24. 이후 당해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임

65) 사례 35, 36, 37, 40의 과징금 금액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과징금(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 제196조)을 합산한 금액임. 각 항목별 과징금 금액 및 산출내역은 공개된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66) 전체 검사대상기간(2004. 3. 25. ~ 2013. 9. 13.)의 미지급 보험금 원금은 432억 2,900만 원이었으나, 제재 대상 기간인 2011. 1. 24. 이후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

〈표 Ⅲ-14〉 사례 14 과징금 산출 방식

구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기본부과율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357,239,592원)×법정최고부과비율(20/100)=71,447,918원			
구간별 과징금*		2억 원 이하	71,447,819원	7/10	50,013,543원
기본과징금 (①)		(소계)	71,447,819원	-	50,013,543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②)		[1단계 조정]	기본과징금의 75%(중대, 과실) = 50,013,543원×75%		37,510,157원
		[2단계 조정]	1차 조정 후 기본과징금의 120%(2년 초과, 3년 이하) = 37,510,157원×120%		45,012,188원
기본 과징 금의 조정 (2차)	가중 여부	3년 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45,012,188원×10/100=4,501,219원)			
	감경 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정 후 과징금(③)		• 기본과징금 • 가중금액 산정(+) • 감경금액 산정(-)		45,012,188원 4,501,219원 0원	49,513,049원
과징금 산정액		백만 원 미만 절사			49,000,000원

주: * 구간별 과징금은 2017. 10. 18.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이 개정되기 전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기본부과율" 적용에 따른 것임
자료: 사례 14 "제재내용 공개안"

사례 35~37, 40의 경우 다른 사례들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큰데, 이는 부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재사유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외에 설명의무가 추가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제재내용에는 과징금 산출에 관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달라진 것인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총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보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더 높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도 사례인 사례 14는 기초서류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도입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과된 반면(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 2년 초과 3년 이하, 조정비율 120%), 2017년 과징금 부과 사례들(사례 35~37, 40~43, 45)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과됨에 따라(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 3년 초과, 조정비율: 150%) 기준금액 및 조정비율이 달라진 점 및 종전에 "과실"에 의한 행위로 평가하였던 보험금 미지급을 2016년 이후 "고의"에 의한 행위로 평가하게 된 점도 과징금 규모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보험금 부당 삭감(9건)

보험금 부당삭감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험금 지급률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지급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근거 없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 상충이 발생하여 담당 주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 (ii)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임에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삭감 지급에 관한 정당한 자료 또는 근거 없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 (iii) 골절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가입한 골절 진단비 또는 골절수술비 특약 정액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iv)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 병력이나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 (v)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 (vi)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vii)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고의사고 추정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한 경우 등이 있다.

보험금 부당삭감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9건(사례 18, 20~23, 26, 27,

44, 46)이다. 이 경우 과징금은 부당 삭감된 금액이 아닌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결과 부당 삭감액 규모와 과징금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보험금 부당삭감 사례의 부당삭감금액과 과징금 비교

No	회사	건수	전체 보험금	삭감된 보험금	과징금 기준금액[67]	과징금 부과금액
18	흥국화재	23	11억 4,000만 원	2억 1,000만 원	2,331만 원	400만 원
20	KB손보	97	9억 3,600만 원	2억 4,400만 원	(미기재)	2,200만 원
21	롯데손보	28	3억 5,600만 원	1억 9,100만 원	(미기재)	500만 원
22	메리츠화재	130	6억 5,800만 원	2억 400만 원	(미기재)	1,700만 원
23	현대해상	45	8억 5,500만 원	2억 700만 원	(미기재)	1,000만 원
26	동부화재	156	23억 6,100만 원	9억 1,400만 원	(미기재)	3,400만 원
27	농협손보	84	5억 5,800만 원	2억 4,300만 원	(미기재)	900만 원
44	MG손보	79	(미기재)	9,300만 원	(미기재)	1,300만 원
46	교보생명	9	(미기재)	2,100만 원	(미기재)	-[68]

예컨대, 사례 20과 사례 27의 경우, 삭감된 보험금의 규모는 거의 동일함에도 과징금 규모는 2.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다른 가중·감경사유상의 차이점에 기인한 점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 규모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18 및 사례 21의 경우 삭감된 보험금 규모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크게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험계약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과징금 금액이 5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부당삭감은 보험금 일부의 부지급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1)항에서 살펴본 보험금 부지급과 동일하며, 보험회사의 법규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얻은 이익은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아닌 부지급(부당삭감) 금액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부과되는 과징금은 부지급(부당삭감) 금액

67) 당해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임

68) 전체 과징금은 413백만 원이나, 이 중 보험금 부당삭감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음

보다는 전체 계약 건수, 전체 수입보험료 및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보험금 등 다른 요인과 더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6건)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여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과다 또는 과소 산출하거나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위험등급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경우 보험료 부당 산출에 해당한다(사례 15, 24~27). 반면 실손의료비 보장 무사고자 할인 특별약관상 할인율 산정 기간을 잘못 적용하여[69] 할인 대상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한 경우 보험료 부당 징수에 해당한다(사례 9,[70] 15). 즉, 보험료 부당 산출은 요율 산출 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기초서류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위반에 해당하고, 보험료 부당 징수는 요율 산출은 적정하게 되었으나, 징수 과정에서 할인율 산정 등이 잘못된 경우로서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69) 무사고 판정기간의 종료일을 '최초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90일 전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로 적용한 사례임

70) 다만 사례 9 관련 '제재내용 공시'에서는 할인요율을 잘못 적용한 행위를 약관 위반이 아닌 사업방법서 위반으로 기재하고 있음

〈표 Ⅲ-16〉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사례 과징금 비교

No	회사	유형		건수	부당 산출·징수 보험료	과징금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금액
9	AIA[71]	부당 징수	과다	3,723건	150만 원	(미기재)	2억 2,100만 원
			과소	1,601건	20만 원		
15	현대 해상	부당 산출	과다	232건	1,700만 원	238,077,530원	3,200만 원
			과소	182건	1,300만 원		
		부당 징수	과다	1,524건	760만 원	610,904,261원	6,100만 원
24	KB 손보	부당 산출	과소	9건[72]	2,200만 원	(미기재)	2,700만 원
25	현대 해상	부당 산출	임의[73]	5건	3,200만 원	(미기재)	1,700만 원
			과소	2건	1억 원	(미기재)	
26	동부 화재	부당 산출	과소	13건[74]	3억 1,000만 원	(미기재)	9,200만 원
27	농협 손보	부당 산출	과소	1건	540만 원	(미기재)	부과면제 (1백만 원 미만)

앞서 본 보험금 부지급이나 부당삭감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부당 산출·부과된 보험료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 부과액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부지급이나 부당삭감은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문제되는 개별 계약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반행위인 반면, 부당산출 및 징수 문제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관련 보험계약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결정하는 "해당 보험계약"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보험료 중 부당 산출된 금액은 극히 일부임에도 과징금은 전체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1) 사례 9의 경우,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도입 전의 부당징수 규모는 과다징수가 1,144,545건(2,807백만 원), 과소징수가 704,467건(1,219백만 원)이었으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도입 이후의 부당징수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었음

72) 단체상해보험으로, 총 피보험자 24,370명 중 1,675명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정상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적게 산출함

73)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와 협의한 보험요율을 임의로 사용함

74) 8개사(보험계약자)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임

4) 보험계약 부당해지(4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부당해지에 해당한다. 예컨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사례 28). 이는 사업방법서 위반인 동시에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부당해지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보험금 부지급과 함께 병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례 28의 경우 문제되는 보험계약의 건수(26건) 및 연간수입보험료(8백만 원) 규모가 미미하여 과징금도 1백만 원만 부과되었으나, 실제로 보험계약의 부당 해지는 보험금 부지급이나 부당삭감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측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볼 수 있다.

5) 상품구성 기준 및 보험료 비중 위반(7건)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상품 구성의 기준이나 보험료 비중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예컨대, 기업관련 종합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는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 보장 중 3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고(상품구성 기준), 그 중 1개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에도(보험료 비중)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방법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사례1~6, 13). 상품 구성 및 보험료 비중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2년에 집중 부과되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6) 기타

앞서 제시한 사례들 외에도,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사례 10), 책임준비금 과소적립(사례 10), 보장성 기준 위반(사례 2, 11),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사례 12), 갱신보험료 안내절차 위반(사례 12) 등이 문제되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공시이율결정 부적정 등으로 8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례 12이다.

사례 12의 경우 동부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 파트너보험'등 42개 금리연동형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금리연동형 장기손해보험계약의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의 가중평균)의 80~120%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2010. 5. 1. ~ 2011. 4. 30. 기간 동안 매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산출방식 대비 최소 0.44%p, 최대 1.49%p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동 기간 중 2,376,745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연간 수입보험료 1조 5,644억 원)에 적용하는 최종공시이율을 공시기준율의 상한 범위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0.5%p 높게 결정한 것이 문제된 사례였다.

위 사례는 실무자의 엑셀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공시이율이 잘못 산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개정전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조정 비율이 25%로 산정되었고, 위반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도 최소비율인 25%가 적용되어 당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 가장 낮은 부과율인 6.25%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인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자체가 9,477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었던 관계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8억 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표 Ⅲ-17〉 사례 12 과징금 산출 방식

구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기본부과율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947,774,050,572원)×법정최고부과비율(20/100)= 189,554,810,114원			
구간별 과징금[1)]		2억 원 이하	200,000,000원	7/10	140,000,000원
		~20억 원 이하	1,800,000,000원	7/20	630,000,000원
		~200억 원 이하	18,000,000,000원	7/40	3,150,000,000원
		~2,000억 원 이하	169,554,810,114원	7/80	14,836,045,885원
기본과징금 (①)		(소계)			18,756,045,885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②)		[1단계 조정]	• 기본과징금의 25%(경미, 과실) = 18,756,045,885×25%		4,689,011,471원
		[2단계 조정]	• 1차 조정 후 기본과징금의 25% (3개월 이하) = 4,689,011,471원×25%		1,172,252,868원
기본 과징 금의 조정 (2차)	가중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감경 여부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30% 감경			
조정 후 과징금(③)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감경금액 산정(-)	1,172,252,868원 0원 351,675,860원		820,577,008원
조정 후 과징금(④)		해당사항 없음			820,577,008원
과징금 산정액		백만 원 미만 절사			820,000,000원

자료: 사례 12 "제재내용 공개"

위 사례 12 제재 시점인 2014년에는 법정부과한도액을 정하는 부과비율이 20%였고 금액이 커질수록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기본부과율"제도가 있어 과징금 규모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2017년 보험업법 및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 개정으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이 20%에서 50%로 상향되었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되었으며, 중대성 및 고의·과실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기준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25%~ 100%가 적용되고, 위반기간에 따른 비율은 25%~150%가 적용된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라 위 사례 12의 과징금을 산정해 보면, 금액이 무려 207억 원에 이르게 된다.

〈표 Ⅲ-18〉 현행 규정에 따른 사례 12 과징금 산출 방식

구분		법정부과한도액	부과비율/부과기준율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947,774,050,572원) × 법정최고부과비율(50/100)= 473,887,025,286원		
기본과징금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과실	• 법정부과한도액의 25% = 473,887,025,286원×25%	118,471,756,322원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위반행위 등의 기간 및 효과 지속기간	• 기본과징금의 25% (3개월 이하) = 118,471,756,322원×25%	29,617,939,080원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가중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감경 여부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30% 감경		
조정 후 과징금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감경금액 산정(-)	29,617,939,080원 0원 8,885,381,724원	20,732,557,356원
부과과징금 결정		해당사유 없음		20,732,557,356원
과징금 산정액		백만 원 미만 절사		20,732,000,000원

결국, 현행 규정에 의할 경우,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대해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

가. 개관

2. 항의 사례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산정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부지급 및 보험금 부당삭감의 경우와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공시이율이나 옵션매입비용 부당 산출에 대해 모두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서 출발하여 산정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위반행위 유형 중에는 연간 수입보험료에 의해 과징금을 산출할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제재 효과도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보험금 부지급 및 부당삭감 사례이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은 부지급 또는 부당삭감된 보험금 규모에 비례하는 반면,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결과 부지급·부당삭감 보험금액 규모가 큰 회사보다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가 큰 회사가 더 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위반행위 유형이나 위반 사유, 위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더 경미한 과징금이 산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징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과징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근본적인 장해가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과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정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에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행정제재 역시 비록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권한의 포괄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현행 보험업법 제127조의3이 제재규정으로서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법규의 문제점을 (i) 위법행위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문제와 (ii) 법치국가 원리 준수여부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법행위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1) 동일유형·동일사유 위반행위간 과징금 규모 불균형

앞서 살펴본 사례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유형이 보험금 부지급으로 동일하고, 그와 같은 위반의 사유도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약관 해석상 문

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처럼 동일유형·동일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정도,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 법규 금지사항 회피·잠탈의 정도 등[75] 그 중대성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즉 미지급한 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그 미지급한 보험금이 곧 보험회사가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금액은 미지급 보험금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지급 보험금(원금)과 과징금 부과금액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보험료로 정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지급 보험금이 큰 보험회사일수록 그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가 클 개연성이 있으나, 문제되는 약관 규정이 주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특약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약관이 포함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등에 따라서는 수입보험료 규모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규모가 비례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입보험료보다는 미지급 보험금 금액이 위반행위의 경중을 나타내는 보다 직접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이라는 단일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11건의 사례[76] 중 미지급 보험금 원금이 1억 원 이상인 사례[77] 9건을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이러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75)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위반행위 경중 판단 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76) 15건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례 중 4건(사례 35, 36, 37, 40)은 과징금 부과사유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외에 설명의무 위반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추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과 설명의무 위반 과징금 금액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분석대상사례에서 제외하였음

77) 사례 12의 경우 전체 검사대상기간(2004. 3. 25. ~ 2013. 9. 13.)의 미지급 보험금 원금은 4억 3229백만 원이었으나, 제재 대상 기간인 2011. 1. 24. 이후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Ⅲ-1〉 미지급 보험금 원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No	미지급 보험금(원금)	과징금
30	10억 9,500만 원	300만 원
31	34억 2,800만 원	600만 원
32	17억 7,800만 원	500만 원
33	4억 9,500만 원	100만 원
34	12억 1,500만 원	600만 원
41	21억 8,700만 원	1,300만 원
42	17억 2,900만 원	200만 원
43	38억 8,700만 원	1,900만 원
45	32억 7,200만 원	2,0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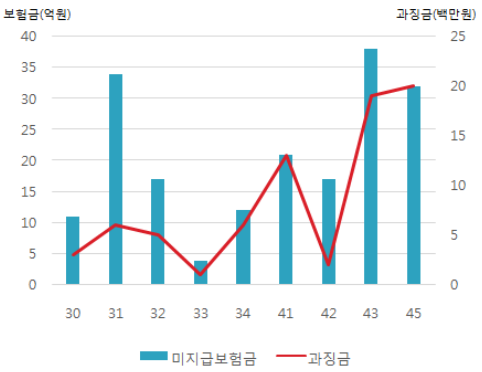

위 사례를 보면, 38억 8,700만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례 43에 부과된 과징금(1,900만 원)이 32억 7,200만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례 45에 부과된 과징금(2,000만 원) 비해 더 적은 금액이고, 사례 32와 사례 42는 미지급된 과징금 규모가 17억 7,800만 원과 17억 2,900만 원으로 비슷함에도 과징금 금액은 5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한편 보험금 부당삭감 사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보험금 부당삭감 사례 9건 중 부당삭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 46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의 삭감된 보험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을 비교해보면 부당삭감금액이 거의 동일한 경우(사례 18, 20, 21, 22, 23, 27)에도 과징금 부과금액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고, 과징금 부과금액이 부당삭감금액이 아닌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보험금 내지 전체 보험료와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2〉 부당삭감 보험금 원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No	삭감된 보험금	과징금
18	2억 1,000만 원	400만 원
20	2억 4,400만 원	2,200만 원
21	1억 9,100만 원	500만 원
22	2억 400만 원	1,700만 원
23	2억 700만 원	1,000만 원
26	9억 1,400만 원	3,400만 원
27	2억 4,300만 원	900만 원
44	9,300만 원	1,3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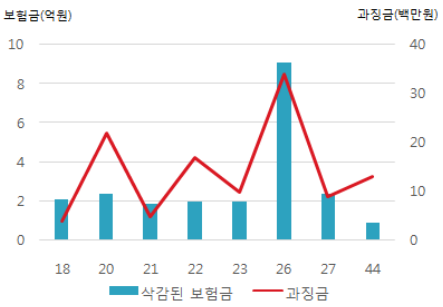

부당삭감 사례의 경우 사례마다 삭감사유가 상이하나 대부분 약관서 정한 삭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삭감하였다는 점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상 동일유형·동일사유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일유형·동일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에도 과징금이 미지급·부당삭감 보험금 원금에 비례하지 않는 것은 제재의 적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동일유형·상이사유 위반행위간 과징금 규모 불균형

보험금 미지급이라는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보험금의 내용 및 특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상해·질병보험금 미지급이 이에 해당한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보험료 대비 보험금 규모가 큰 반면,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험금 규모가 사망보험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사망, 질병, 상해 등을 함께 보장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는 동일하나 실제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인지 질병·상해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특히 부과 과징금 산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된다. 과징금이 미지급 보험금이 아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실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78]와 재해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미지급사례 4건의 미지급 보험금(원금) 대비 과징금 금액 비율[79]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기타 보험금 미지급의 과징금비율 비교

No	구분	미지급보험금(원금)	과징금	비율(%)*
8	**기타**	**5,500만 원**	**600만 원**	**10.91**
14	재해	432억 2,900만 원[80]	4,900만 원	0.11
16	**기타**	**1,700만 원**	**2,400만 원**	**141.18**
17	**기타**	**5,000만 원**	**500만 원**	**10.00**
30	재해	10억 9,500만 원	300만 원	0.27
31	재해	34억 2,800만 원	600만 원	0.18
32	재해	17억 7800만 원	500만 원	0.28
33	재해	4억 9,500만 원	100만 원	0.20
34	재해	12억 1,500만 원	600만 원	0.49
39	**기타**	**1,800만 원**	**700만 원**	**38.89**
41	재해	21억 8,700만 원	1,300만 원	0.59
42	재해	17억 2,900만 원	200만 원	0.12
43	재해	38억 8,700만 원	1,900만 원	0.49
45	재해	32억 7,200만 원	2,000만 원	0.61

주: 비율=과징금/미지급보험금(원금)×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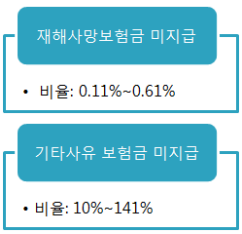

동일유형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이 다른 경우 과징금 부과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미지급 보험금 규모에 정비례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보험금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악의적인 보험금 미지급과 단순 실수나 업무상 착오에 의한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 사유가 실제 위법성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보험료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러한 요인에 따라 과징금 부과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78) 15건의 사례 중 설명의무 위반이 과징금 부과사유로 추가된 4건은 제외함

79) 비율=과징금부과금액/미지급보험금(원금)×100

80) 전체 검사대상기간(2004. 3. 25. ~ 2013. 9. 13.)의 미지급 보험금 원금은 432억 2,900만 원이었음. 제재 대상 기간인 2011. 1. 24. 이후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3) 상이유형 위반행위간 과징금 규모 불균형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은 그 위반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나, 과징금 부과의 관점에서는 크게 (i)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위반 유형(A유형)과 (ii)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위반 유형(B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위반 유형(A유형)에는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부당삭감, 보험계약 부당해지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이 되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미지급 등이 문제된 보험계약만을 의미한다. 예컨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당해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측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다.[81]

그런데, 전체 보험계약 중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러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매우 적은 금액일 수 밖에 없다. 반면 보험금 미지급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감독당국은 이를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모두 갖추었고, 실제 부당하게 보험금이 미지급될 경우 보험회사에 그 미지급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미지급 보험금 원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인 것이다.

반면,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위반유형(B유형)의 경우 이와 정 반대의 현

81)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사례들의 제재내용 공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 소멸시효 경과 전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건에 대하여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억 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억 원 등 총 ***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실제 보험금이 미지급된 보험계약을 제재대상으로 보고, 그 위반 건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대부분의 제재내용 공개에는 실제 과징금 산출 기준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와 같이 기준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확인이 곤란함

상이 발생한다.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등의 사례를 보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에 의한 위반으로 그 행위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보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그 위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관련 보험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보니,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가 A유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 된다. 결국 B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사례 14 외 다수)와 공시이율결정 부적정 사례(사례 12)이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사례 중 사례 37을 예로 들어 보자. 사례 37의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1,025억 원이었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제도 도입일인 2011. 1. 24. 이후의 미지급 보험금 총액은 158억 원(원금 120억 원)이었다. 이처럼 수백억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82]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결과 그 금액은 미지급 보험금 총액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3억 9,50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까지 과징금 부과사유로 추가하여 산출한 금액임에도 이와 같이 낮은 금액의 과징금이 산출된 것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규모는 위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최초 과징금 부과사례인 사례 14를 살펴보자. 사례 14는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례 중 유일하게 제재내용 공개 자료에 그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례이다. 위 사례의 경우 검사대상기간 전체(2004. 3. 25.~2013. 9. 13.)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금은 432억 2,800만 원이었고, 지연이자는 128억 4,100만 원이었다. 그 중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규정 도입일인 2011. 1. 24. 이후 보험금 미지급 건[83]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4,90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전체

82) 사례 37의 제재내용 공개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산출 근거 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음

기간 9년 6개월(2004. 3. 25.~ 2013. 9. 13.)과 제재대상기간 2년 7개월(2011. 1. 24. ~ 2013. 9. 13.)을 단순비교해볼 때 제재대상기간의 미지급 보험금 원금 규모는 대략 115억 원[84] 내외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85] 이에 해당하는 연간수입보험료는 3억 5,7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4,900만 원에 불과하였다. 100억 원대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하여 4,900만 원의 과징금이 산정된 것으로, 이러한 과징금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반면 B유형에 해당하는 사례12의 경우 담당자의 단순 과실에 의해 기초데이터 산출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공시이율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산출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더 높은 금액의 이자가 지급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는 물론이고, 법규 잠탈이나 거래질서 문란 등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보험료는 무려 1조 5,644억 원에 이르렀고, 제재대상기간(2011. 1. 14. 이후)의 연간 수입보험료도 9,477억 원에 해당하여, 과실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위 사례에 2017년 개정된 현행 보험업법 및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그 과징금 금액이 무려 207억 원으로 산출된다(〈표 Ⅲ-17〉 및 〈표 Ⅲ-18〉 참조).

이처럼, 그 위반의 중대성보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징금 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기준은 아무리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한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고,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금액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83)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미지급액이 얼마인지는 제재내용 공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84) 432억 원의 27%임

85) 물론 이러한 추정은 제재대상 건수가 기간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대상기간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 및 금액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함

〈그림 Ⅲ-4〉 A유형과 B유형 과징금 규모 비교

[A유형 사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 사례 37
- 약관 기재사항 위반 :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 의무위반금액(총 미지급금액): 1,025억 원
  (2011. 1. 24. 이후): 158억 원(원금 120억 원)
- 연간 수입보험료: *[기재 없음]*
- 과징금: 3억9,500만 원*

* 금융당국은 위 사례를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하였고(부과비율 150%),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설명의무 위반까지 과징금 부과사유로 추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음

[B유형 사례]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 사례 12
- 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위반: 공시이율 부적정 산출
  (기초데이터 산출상 오류로 인해 공시이율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산정됨)
- 의무위반금액: *[기재 없음]*
- 연간 수입보험료: 1조5,644억 원
  (2011. 1. 24. 이후): 9,477억 원
- 과징금: 8억2천만 원(현행 규정 적용 시: 207억 원)

다. 명확성 원칙 등 법치국가원리 위반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86]로서, 이러한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법률유보 원칙), 그 법률은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명확성 원칙).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에 관하여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87] 이때 핵심은 예측가능성이다. 규범의 수범자가 그 제재규범이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 역시 그 금지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 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86)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함(김동희 2007, p. 140)

87) 헌법재판소 1998. 4. 30. 자 95헌가16 결정

과징금 규정에 대해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의 내용 및 정도와 관련된 사례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위 사건에서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교통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88]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공공복리'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자동차운수의 발달 도모를 통한 운송에 있어서의 안전과 쾌적 및 편의 등에 관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및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모두 규정하는 것은 전문성, 기술성, 시의성에 비추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화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예측이 쉬우며 행정청의 자의적 법집행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다.[89]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법원은 행정청에게 매우 폭넓은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이라는 과

88) [심판대상 규정]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운송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지 기타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규정]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사업면허 등의 취소 등)
①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 제31조의2(과징금처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9) 헌법재판소 2000. 2. 24. 자 98헌바37 결정

징금 부과 요건은 위헌에 이를 정도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도 금지대상행위를 추상적이나마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그러한 추상적 규정조차 두지 않고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기초서류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경우에 따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러한 체계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Ⅳ.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법령으로, 과징금 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최초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에 한하여 부당한 가격 책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가격인하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격인하명령을 한 때부터 실제 가격을 인하한 때까지(이른바 '실행기간')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을 과징금액으로 하였다. 이 당시 과징금은 순수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1998년부터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등에 대해 고액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과징금의 부과의 정당성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제도 개선작업을 거쳐 2004년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정한 후 가중·감경을 통해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현재 공정거래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②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항), ③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 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28조 제2항) , ④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⑤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항), ⑦ 보복조치(법 제23조의3) 등 7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모두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표 Ⅳ-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	세부유형		기준금액	부과비율	매출액이 없는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매출액	100분의 3	10억 원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위반금액	100분의 10	-
	상호출자		주식취득가액	100분의 10	-
	순환출자		채무보증액	100분의 10	-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매출액	100분의 10	20억 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5억 원 한도		-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부당 제한	관련매출액	100분의 10	20억 원
		기타	관련매출액	100분의 5	10억 원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제외)		관련매출액	100분의 2	5억 원
	재판매가격 유지		관련매출액	100분의 2	5억 원
부당지원행위			관련매출액	100분의 5	20억 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매출액	100분의 5	20억 원
보복조치			관련매출액	100분의 2	5억 원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으로서 과징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률은 공정거래법 포함 총 8개[90]이다.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정위 관할 법령상 과징금

90)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규정을 살펴보면, 과징금을 독자적 제재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의 경우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를 해당 법령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영업정지 대체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사유 자체가 제한적이고 명확하다.

한편,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 대신 하도급대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2배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과징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표 Ⅳ-2〉 공정위 소관 기타 법령상 과징금 제도

법령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법정 상한액
하도급법 제25조의3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행위 위반 • 부당한 특약 체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물품구매 강제 •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위반 • 부당한 위탁 취소 • 검사 기준, 방법 및 시기의 공정성 • 부당반품 금지 • 감액금지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 기술자료 제공요구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의무 위반** • 건설하도급 보증관련 의무 위반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위반 •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 부당한 대물변제 • 부당한 경영간섭 • 보복조치 • 탈법행위	하도급대금 2배

〈표 Ⅳ-2〉 계속

법령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법정 상한액
표시광고법 제9조	• 허위·과장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방적 표시·광고 •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할부거래법 제42조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시정조치명령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관련매출액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천만 원)
방문판매법 제51조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동일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방지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천만 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34조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매출액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천만 원)
대규모 유통업법 제33조	•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시 서면의 교부 및 서류 보존 등의 의무 위반 • 상품대금 감액 금지 • 상품판매대금 지급 관련 의무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수령거부·지체 •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 판매촉진비용의 부당전가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 배타적 거래 강요 • 경영정보 제공 요구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 위반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	관련 납품대금 및 연간 임대료
가맹사업법 제35조	• 가맹금 예치 관련 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금 반환 관련 의무 위반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제공 관련 의무 위반 • 불공정거래행위(상품·용역의 공급 및 영업 지원 등 부당 중단, 가맹사업자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거래상 지위 이용 불이익 제공, 과중한 위약금 부과, 거래유인 등)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표 Ⅳ-2〉 계속

법령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법정 상한액
	•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의무 위반 • 가맹점사업 단체활동 관련 불이익 제공 •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관련 의무 위반	

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매출액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대부분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부과되고 있다.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91] 이때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관련 상품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92]

이처럼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사업자의 매출에 과징금 금액이 비례하게 되어 사업자마다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징금의 제재 및 억제 효과는 절대적인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자금력에 좌우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구체적

91)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관련 과징금 산정 시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봄(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9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I. 5

인 과징금액은 물론이고 그 상한을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93]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련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관련매출액은 법위반행위와 관련성이 매우 약하여,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대리변수로서 관련매출액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부당이득액이 존재하고 계산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이 관련매출액보다 법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관련매출액이란 위반기간 동안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반드시 법위반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관련매출액과 행위의 위법성 내지 책임의 정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94]

둘째,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련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할 경우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이나 비난가능성을 현저히 상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과잉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95]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i) 과징금 부과 시 부당이득의 유무 및 규모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ii)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과징금은 정액과징금으로 그 한도를 정하며, (iii)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만큼을 징수한 과징금에서 환급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96]

2) 해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일본의 경우는 카르텔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카르텔 실행기간 중 카르텔 대상이 된 상품·용역의 관련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제곱하여 얻은 금액이 기준금액이 된다(일본 독점금지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이때 원칙적으로 카르텔에 의해 얻

93) 이봉의(2011), p. 17
94) 이봉의(2011), p. 18
95) 이봉의(2011), pp. 19~21
96) 이봉의(2011), pp. 22~25

은 부당이득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카르텔 대상이 된 상품의 거래액을 합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97]

EU의 경우 2006년 이전에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정액의 기준금액을 가중·감경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가 2006년 이후에는 위반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개별사업자의 판매액의 가치(Value of Sales)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였다.[98]

독일의 금전제재에는 과태료(Bußgeld)와 부당이득환수(Vorteilsabschöp-fung)가 있다. 과태료는 제재적 성격을, 부당이득 환수제도는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카르텔, 시장지배지위남용행위, 불공정행위 등이 포함되며, 과태료 상한은 100만 유로(개인) 또는 전년도 총 매출액의 10%(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다.[99] 한편 부당이득 환수제도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행위를 계속하여 초과이익을 취득하고 그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초과이득은 위반행위로 획득한 실제적인 수입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 같은 기간에 획득하였을 수입과의 차액을 의미한다.[100]

한편, 미국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규정이 없고, 셔먼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Fine)과 FTC 제정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벌(Civil Money Penalty)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 FTC는 법원에 민사벌을 부과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벌금은 법원에 의해 부과되는데 관련매출액의 20%를 기준 벌금액으로 하여 각종 가중 및 감경을 적용하게 된다.[101]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다.

97) 권오승 외 4인(2003), p. 34
98) 권오승 외 4인(2003), p. 37; 홍대식(2006), p. 226
99) 홍대식(2006), p. 235
100) 홍대식(2006), p. 238
101) 권오승 외 4인(2003), pp. 53~54

다.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대금

1) 하도급법상 과징금 제도

공정위 소관법령들이 대부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기준금액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징금 기준금액의 차이는 공정거래법의 제재대상과 하도급법의 제재대상의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주로 기업이 불공정한 행위로 시장 전체에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거래나 계약이 수반되지만 개별적·구체적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보다는 시장 자체의 공정 질서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문제된다. 반면, 하도급법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며, 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공정성, 이행의 적절성 등이 문제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가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인 반면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은 개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도급거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계약을 전제로 한 민사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 등 사법(私法)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들간의 분쟁은 사법(私法)의 법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법적 규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거래분야에서 협상력의 차이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한 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종속관계로 인해 발생한 시장실패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공적 집행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102]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법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법령으로 대금지급의 시기 등을 정하고(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하거나(하도

102) 유진희·최지필(2013), pp. 192~193

급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하도급법 제25조의3), 형사상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1호).

2)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은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표 Ⅳ-3〉 하도급법상 과징금 산정 방식[103]

순서	산정 항목	산정 방법		내용
1	기본 산정 금액	법정상한 ×위반금액 비율 ×부과기준율		[법정상한] 하도급대금 2배 [위반금액 비율]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0~80% • 중대한 위반행위: 40~60%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0~40%
2	1차 조정	위반 횟수	100분의 20	3년간 4회 이상 조치 벌점 누산 2점 이상
			100분의 10	3년간 3회 이상 조치 벌점 누산 2점 이상
		피해 수급사업자 수	100분의 20	사업자 수: 70개 이상
			100분의 10	사업자 수: 50개 이상, 70개 미만
3	2차 조정	가중	100분의 20	보복조치
		감경	100분의 20	• 피해액 전액 구제 • 조사협력(조사단계)
			100분의 10	• 피해액의 50% 이상 구제 • 조사협력(조사단계 이후)
4	부과 과징금 결정			현실적 부담능력 고려

103)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함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의 2배에 미지급 비율 및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결국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2배가 법정 상한이 된다. 또한 위반횟수 및 피해수급사업자 수에 따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1. 나.).

2. 은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가. 은행법상 과징금 제도

은행법은 건전경영의 유지(제6장)에 관한 사항 중 자산운용 방법 및 한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은행법 제65조의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신용공여 한도 초과, ② 지분취득 한도 초과, ③ 모은행과 자은행 사이 거래관련 금지행위 위반, ④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 금지업무 위반, ⑤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보유의무 위반, ⑥ 대주주의 다른 회사 출자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등이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에 해당한다(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은행법 제65조의3 제16호 내지 제19호).

〈표 Ⅳ-4〉 은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	세부유형	기준금액	부과비율
신용공여 한도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초과신용공여액	100분의 30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위반		
	모은행 신용공여 한도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초과신용공여액	100분의 100
지분증권 취득한도 위반	대주주발행 지분증권 취득 한도 위반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 장부가액 합계액	100분의 100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한도 위반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 장부가액 합계액	100분의 30
자은행 등과의 거래관련 금지행위 위반	자회사 지분증권 담보 신용공여	해당 신용공여액	100분의 5
	모은행 등 주식 소유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100분의 5
	모자은행 상호간 적정한 담보 없는 신용공여	해당 신용공여액	100분의 30
	모자은행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	100분의 30
기타 금지업무 위반	투자한도 초과	초과투자액	100분의 30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30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 초과	초과소유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30
	은행 주식 담보대출	대출금액	100분의 5
	은행주식 취득 목적 대출	대출금액	100분의 5
외국은행의 국내자산보유의무 위반		위반금액	100분의 5
대주주 출자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등		신용공여액 자산장부가액	100분의 100

은행법은 보험업법과 달리 영업행위 관련 규제 위반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은행법 제34조의2),[104] 불공정 영업행

104)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

위(동법 제52조의2)[105]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동법 제69조 제1항 제5의2호, 제9호), 광고 관련 규제 위반(동법 제52조의3)[106] 중 광고 방법 및 절차 위반에 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동법 제69조 제1항 제10호), 광고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동법 제68조 제2항).

이처럼 은행법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영업행위 과정은 물론, 은행과 고객 사이의 계약의 유지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제52조의2(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06) 제52조의3(광고) ① 은행은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은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의 구체적 내용, 광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금액

은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은 은행의 건전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며, 이는 보험업법상 자산운용방법에 관한 제한과 거의 동일하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보험업법상 자산운용방법에 관한 제한과 마찬가지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2017년 4월 은행법 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일제히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과징금 부과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한 금액만 올리는 방식의 개정으로 금전제재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제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② 공시위반 과징금 및 ③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으로 구별된다.

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자본시장법 제34조),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거래 관련 제한 위반(동법 제77조) 및 업무정지처분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동법 제420조 제3항, 별표1)를 대상으로 한다(자본시장법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대상자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430조 제1항).

〈표 Ⅳ-5〉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	세부유형	기준금액	부과비율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	취득금액	100분의 100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 등 소유	초과 취득금액	100분의 100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100분의 10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특례규정상 거래제한 위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100분의 100
	신용공여 한도위반	초과 신용공여액	100분의 40
업무정지처분 부과대상		업무정지기간의 이익 범위	

자본시장법상 업무정지처분 부과대상 행위는 자본시장법 별표1(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위탁계약 취소·변경명령의 사유)에 300여 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모두 망라되어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업무정지처분 부과대상이 될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사유는 다양하지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과징금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2)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은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및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보고서별로 별도의 기준금액 및 부과비율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된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은 위반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공시서류에 기재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증권신고서에는 모집 매출 관련 사항[107] 및 발행 회사에 관한 사항[108]을 망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자본시장

107) 일반 사항, 대상 증권의 권리 내용, 투자위험요소, 인수인의 의견, 자금 사용목적,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108) 발행 회사의 개요, 사업, 재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 주주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

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공시대상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통상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109] 이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허위공시가 된다. 그러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권신고서 기재 중 어느 한 부분에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표 Ⅳ-6〉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	세부유형	기준금액	부과비율(상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증권신고서상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100분의 3 (20억 원 이하)
	미제출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기재	공개매수 예정총액	100분의 3 (20억 원 이하)
	미제출 등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일일평균거래금액	100분의 10 (20억 원 이하)
	미제출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당해 상장법인 발행주식 시가총액	10만분의 1 (5억 원 이내)
	허위기재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이나 관련 매출액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공시와 관련이 있는 대리변수인 관련 증권의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 등을 기준금액으로 채택하되,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유형별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도 금융

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가 요구하는 사항

109) 예를 들어 최근 제출된 현대글로비스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총 920페이지 분량임

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430조 제1항).

3)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한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과 달리 대상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경과실에 의한 위반의 경우에도 부과가 가능하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금액 또는 별도 기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그 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이 각각 상이하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주로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자산운용관련 규제 및 대주주와 거래 규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공시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금액이 적용되는데,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시 유형별로 20억 원 또는 5억 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i)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로 하되, 객관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나 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3천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 3.바.(1)), (ii) 그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 규정 별표2, 2.나.(7)).

한편,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기

본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며(동 규정 별표2, 5.(3)),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규정 별표2, 5. (5)).[110]

2017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는 2배 이상 인상되었으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이나 상한금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금액은 인상되지 않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 대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령 중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총 7건으로, 그중 전기통신사업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정보통신망법 및 단말기유통법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두고 있고, 전파법, 방송법 및 위치정보법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 등 제공 관련 의무 위반이나 서비스 제공 관련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공정위나 방통위 소관 다른 법령과는 달리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허위고지'를 과징금 부과사유로 정하고 있다. 약관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111] 정보통신망법은 주로 개인정보 수집, 처

110) 배상액 범위 내 감경 규정 및 현저히 과도한 경우 감면 규정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뿐 아니라 다른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됨

111) 참고로, 약관을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는 약관규제법 조차도 약관 위반행위 자체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음

리, 위탁 및 활용 관련 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시장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리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방통위 소관법령에 의해 최근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112]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건에 대하여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서비스 제공행위). 2018년 1월에는 이동통신사들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06억 3,900만 원[113]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단말기유통법 위반, 차별적 장려금 지급 및 이로 인한 부당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표 Ⅳ-7〉 방통위 소관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법령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법정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114] 위반〉 • 설비 등 제공 관련 불합리한 제한 및 차별 등 • 설비 등 제공 관련 협정체결 거부, 불이행 • 설비 등 제공 관련 취득한 다른 사업자 정보의 부당 유용 • 비용 및 수익의 부당 분류에 기한 대가산정 •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행위 •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허위고지 • 설비 등 제공 대가 부당 결정·유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원)

112) SKT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LG U+접속경로를 홍콩, 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하여 응답속도가 느려지도록 함

113) SKT 213억 5,030만 원, KT 125억 4,120만 원 및 LGU+ 167억 4,750만 원

11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표 Ⅳ-7〉 계속

법령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법정 상한액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 위반〉 •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영업보고서 허위 기재 • 회계장부 기재 및 관리 부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정지처분 대체 과징금〉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115]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기획, 제작, 편성 관여 • 정당한 사유 없는 광고판매 거부, 중단, 해태 및 거래조건 차별 • 정당한 사유 없는 광고대행수수료 지급 거부 • 광고판매 대행사업 회계와 다른 사업의 구분의무 불이행 •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계약 강요 〈방송사업자 금지행위[116] 위반〉 • 방송광고 판매목적의 부당 경영간섭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거부, 중단, 거래조건 차별 • 정당한 사유 없는 수탁수수료 부지급	5억 원 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의 동의 없는 민감정보 수집 • 개인정보 이용 제한 위반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위탁 처리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14세 미만자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 제공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매출액이 없는 경우 4억 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동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 지원금 차별 지급 • 지원금 상한액 초과 또는 공시기준과 다른 지원금 지급 • 지원금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개별계약 •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관련 오인 유발행위 •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점 선임 승낙 거부 • 공정한 유통환경 저해행위	관련 매출액 100분의 3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원)

1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1항

116) 동법 제15조 제2항

〈표 Ⅳ-7〉 계속

법령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법정 상한액
	〈이동통신 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 지원금 차별 지급 • 대리점의 공시지원금 추가지원 관련 한도 위반 • 지원금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개별계약 •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관련 오인 유발행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업정지처분 대체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방송법 제19조	• 업무정지처분 대체 과징금	1억 원 이하
전파법 제73조	•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제한명령 대체 과징금	3천만 원 이하

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매출액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최근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3억 9,600만 원으로 산출·부과되었는데, 페이스북의 국내 매출을 확인하지 못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 결과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다.[117]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후 최대 규모[118]인 50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동통신사 불법지원금 사례를 보면, 가장 높은 과징금인 210억 원을 부과 받은 SKT의 경우

117) ZDNet Korea(2018. 3. 22), "페이스북 과징금이 3억 9,600만 원이었던 이유"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322174015&type=det&re=

118)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최고액은 2013년 12월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 1,064억 원(SKT 560억 원, KT 297억 원, LGU+ 207억 원)이었음

전체 위반기간(2017. 1. 1.~2017. 8. 31.) 중 5개월(2017. 1. 1.~ 2017. 5. 31.)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인 989,446,591,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2017. 6. 1.~2017. 8. 31.)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정 상한금액(10억 원)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위 관련매출액에 2.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후 가중 및 감경을 거쳐 최종 과징금이 산정되었다.

페이스북에 부과된 과징금과 SKT에 부과된 과징금은 근거 법령은 다르나, 과징금 부과기준 및 법정 상한금액(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이 동일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10억 원으로 동일하여 사실상 그 위법성의 경중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매출액의 차이가 과징금 부과액의 차이로 연결되어 페이스북에는 3억 9600만 원의, SKT에는 2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되었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의 경우 그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의 특성에 따라 관련매출액, 위반금액, 계약금액, 이득금액, 또는 별도의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련매출액 또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데, (i)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소비자 전체에 불이익을 끼치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이득을 얻는 경우(공정거래법, 단말기유통법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적용되는 반면, (ii) 회사의 직접적 부당이득은 없으나 부의 이전 등 불법적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은행법,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 등)의 경우에는 위반금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위 두 가지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또는 매출액이나 위반금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행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개별 원수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에 국가가 개입하

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개별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불공정이 있을 경우 그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된 증권의 매출액, 거래가액 등 개별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에는 이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한다.

따라서 보험업법도 그 과징금 부과대상행위의 특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출액 기준 외에 별도의 부과기준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기초서류 위반 관련 주요국의 사례

1. 개관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및 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규정은 그 유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고,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초서류는 상품규제 차원의 논의와 영업행위규제 및 제재 관련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상품규제 현황 및 보험금 부지급 및 기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일본

가. 상품규제[119)]

일본 보험업법은 '기초서류'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및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 및 변경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의 위임을 받은

119) 이하 본 장에서 각국의 상품규제에 관한 내용은 서현재(2016), pp. 24~25, pp. 39~4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사업방법서 및 약관의 기재사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계약자 보호 결여 여부, 부당 차별 여부, 선량한 풍속 저해 여부, 계약 내용의 명확성 및 평이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심사한다(일본 보험업법 제5조 제3호, 제124조 제1호).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재사항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이 보험계리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지 등을 기준으로 내용 심사를 하고 있다(일본 보험업법 제5조 제4호, 제124조 제2호).

보험회사는 보험업 면허 신청 시 위 기초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관련이 적은 사항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보험업법 제123조). 금융청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초서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일본 보험업법 제131조). 한편, 인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00만 엔 이하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일본 보험업법 제333조 제40호, 제41호).

나. 기초서류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청장관은 보험회사 업무 정지, 임원 해임 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일본 보험업법 제133조 제1호). 이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학계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20]

120) 石田 満(2015), p. 282

〈표 V-1〉 일본과 한국의 기초서류 관련 규제 비교

항목	일본 보험업법	한국 보험업법
기초서류 작성원칙 준수	•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제4조, 제5조) • 위반 시 면허 또는 변경 인가·신고 불허(제5조)	•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제128조의3) •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196조)
기초서류 변경 시 인가·신고	• 기초서류 변경 시 인가 또는 신고의무(제123조)	• 기초서류 변경 시 원칙적으로 신고 불필요(제127조)
	• 인가·신고의무 불이행 시 100만 엔 이하 과태료 부과(제333조)	•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제196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위반	• 기초서류 내용 중 "특히 중요한 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임원해임, 면허취소 등 처분 대상이 됨(제133조)	• 기초서류 내용 위반 시 "특히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불문하고 과징금 부과(제127조의3) 및 영업정지 등 비금전적 제재(제134조) 대상이 됨

다. 일본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건[121]

기초서류 준수의무 도입 추진 당시 감독당국은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고의적인 보험금 부지급을 소비자의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보험사의 Unfair Insurance Practice로 간주하고, 영업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을 참고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기초서류 준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고의적인 보험금 부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Unfair Insurance Practice)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122]

우리나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도입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보험금 부지급 제재 사례는 2005년 불거진 일본 보험금 미지급 사태이다. 2005년 당시 주요 생명보험회사인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 및 후지(富士)화재가 자동차보험 특약보험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후 생보 및 손보 전반에 걸쳐 보험금 및 급부금 등의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

121) 이하의 일본 보험금 지급거절사건 관련 내용은, 이홍무(2007), pp. 15~36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1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 11. 3),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p. 16

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생보사의 경우 메이지야쓰다생명 외 38개사 중 31개가 부당하게 보험금 및 급부금 지급을 거절한 점이 드러났고, 지급거절 및 미지급의 유형에는 ①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② 지급 누락 및 청구 권유 누락, ③ 계약 미비를 이유로 하는 지급거절 등이 있었다. 일본 금융청은 메이지야스다생명에 대하여 2005. 3.과 2005. 11.에 각각 2주간의 업무정지명령 및 업무개선명령을 내렸고, 니혼생명에 대해서도 2005. 7. 지급심사 관련 체제정비 등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첫째,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로는, (i) 고지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ii) 의사의 확정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iii) 의사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험책임 개시 전에 발병한 질병으로 취급하여 보험사의 면책을 적용한 사례, (iv)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등이 있었다.

둘째, 지급누락 및 청구권유 누락은 주로 주계약에 근거하는 보험금 청구가 있었음에도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이다. 보험회사는 청구된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금융청은 고객이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입원급부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통원급부금도 함께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청구를 누락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계약 미비를 이유로 하는 지급거절은, 계약 단계에서 영업직원이나 대리점이 부실기재나 고지의무 위반을 유도하고 추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그 부실기재나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메이지야쓰다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사례도 여기에 해당하였다.

한편, 손해보험사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금 부지급이 문제되는 경우보다 자동차보험의 대차비용과 같은 특약에 의한 부수적 보험금 미지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

48개 손해보험사 중 26개사에서 부수적 보험금 지급 누락이 발생하였고, 지급누락 건수는 총계로 18만 614건, 금액은 약 84억 300만 엔에 이르렀는데, 지급누락의 90%는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였다. 금융청은 위 26개사에 대하여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일본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며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 보험업법 제133조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보험금 미지급 사태 이후에도 일본의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제재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3. 미국

가. 개관

미국 보험업의 경우 1945년 맥카렌 퍼거슨법(Macarran-Ferguson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아닌 개별 주 정부의 감독을 받고, 연방 차원의 보험상품 관련 법률은 없고 주마다 별도의 보험법이 존재한다. 각 주 정부 보험감독기구 수장으로 구성된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라 함)가 모델법 등을 제정하면 각 주정부가 해당 모델법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할 경우에도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 등을 가하여 주법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형사처벌, 인·허가 취소와 함께 민사금전벌(Civil Money Penalty)을 활용하는데, 민사금전벌은 행정법상 의무확보수단으로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Civil Procedure)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제재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이나 인·허가 취소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23] 민사금전벌은 부과금액이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도 있어 탄력적인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뉴욕주도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1952년 민사금전벌을

123) 박윤흔(1990), p. 59

채택하였다.[124]

미국의 경우 금전벌 부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일련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Unfair Insurance Trade Practice)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당한 처리(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당 처리 관련 제재를 NAIC 모델법과 뉴욕주 보험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NAIC

1)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Act

NAIC는 1971년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당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1990년에는 이 내용을 별도 법안으로 마련하여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당처리 관행에 관한 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Act, 이하 'UCSP Act'라 함)'을 제정하였다. 모델법 제정의 목적은 보험금 청구 시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1997년에는 개정된 모델법이 공표되었다. 대부분의 주들은 위 모델법의 내용을 주법에 반영하였으나 반영과정에서 일부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각 주별로 해당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였다.

모델법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공정 처리(Unfair Claim Practice)의 유형으로 1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UCSP Act §4).

124) 박윤흔(1990), p. 7

〈표 V-2〉 Unfair Claim Practices 유형

1. 고의로 보험금 청구권자나 피보험자에게 문제되는 보상 범위와 관련된 사실이나 약관 조항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2.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연락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 사실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3.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합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 및 적용하지 않은 경우
4.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일응 분명한 상황에서, 선의에 의한 신속, 공정, 공평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5. 소송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제시함으로써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6.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7.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조사를 완료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8. 보험 가입 당시 제시된 서면 광고자료에서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보험계약자 자신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9.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중대한 변경사항에 근거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10. 보상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11. 손실에 관한 공식적인 증거자료 및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조사 및 지급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12.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13.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양식 및 그 용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14. 정비업체가 적절한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UCSP Act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1,000달러 이하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제재금의 합계는 100,000달러 이하로 정하고 있다. 다만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은 25,000달러, 전체 제재금 합계는 250,000달러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UCSP Act §6B).

2) Unfair Trade Practices Act

NAIC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법(Unfair Trade Practices Act, 이하 'UTP Act'라 함) 모델법을 제정하였다. UTP Act는 16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보험회사가 고의로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V-3〉 모델법상 Unfair Trade Practices 유형

1. 보험약관에 대한 허위의 설명 내지 허위 광고
2. 보험회사의 보험사업 수행에 관한 허위의 정보 제공 및 광고 등
3.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4. 불매운동,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
5. 허위 공시 및 등기
6. 보험모집을 대가로 대리점 주식(Agency Company Stock)을 부여하거나, 기타 이익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7. 불공정한 차별
8. 리베이트
9. 자격 있는 모집종사자를 통하지 않은 단체보험 가입 제안
10. 마케팅 및 실적 관련 정보 미제공
11. 민원 처리 절차 운영업무 기준 위반
12.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가입 청약서에 허위기재를 유도하는 경우
13. 금융설계사(Financial Planner), 투자 자문사(Investment Advisor) 등 용어 사용
14. 장기요양보험 판매 관련 정보 미제공
15. 보험금 청구 관련 내역 미제공
16. 기타 관련 규정 위반

보험회사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달러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재금의 상한은 100,000달러이다. 한편, 고의적, 악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25,000달러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전체 제재금 상한은 250,000달러이다. 고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가 가능하다(UTP Act §8A).

다. 뉴욕주 보험법

1) 상품규제[125]

뉴욕주 보험법은 상품규제 형식으로 사전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손해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서류(Policy Form)는 뉴욕주 금융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금융청장(Superintendent)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청장이 인가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사전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뉴욕주 보험법 §2307(b)). 보험요율 중 위험구분 또는 적용지역에 관한 사항은 사전 인가를 받거나 인가 거부 처분 없이 90일을 경과하면 해당 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2307(a)).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인가의제기간이 원칙적으로 90일이다. 생명보험상품 중 상해·질병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의 요율은 인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고, 대신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서류와 함께 미국계리학회 회원으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계리사가 확인한 보험요율 자기검증서(Statement of self-supporting)를 제출해야 한다(뉴욕주 보험법 §4228(h)). 반면 상해·질병 보험은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뉴욕주 보험법 §3216(b), §3231(d)).

한편, 뉴욕주 보험법은 우리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변경·사용정지 명령권과 유사한 사전인가 철회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청장은 인가를 받은 보험계약서류가 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인가를 철회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2307 (b), §3110, §3202). 특히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법규위반사유 외에 보험료가 보험급여에 비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조항이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있거나, 부당·불공정하거나, 형평에 어긋나거나, 뉴욕주의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인가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불공정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경우 인가를 철회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3202).

125) 서현재(2016), p. 22

뉴욕주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표준약관제도는 없으나,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과 유사하게 보험계약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표준 조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금전제재

뉴욕주의 경우 주 감독당국인 금융청이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청장이 제재를 부과한다. 보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 금융청장은 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행위별로 1,000달러 이내의 제재금(Penalty)을 부과할 수 있고(뉴욕주 보험법 §109(c)), 시정·중지명령(Injunction)을 내릴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327(a)). 법령에서 별도로 금전제재(Money Penalty) 부과를 정한 경우 금융청장은 그 제재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109(c)(3), (d)). 한편, 제재 대상자가 보험법, 관련 규정 및 감독당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청장은 관련 인허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인허가 자체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2110(a)(1)).

뉴욕주 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금의 규모 자체는 우리나라 과징금이나 벌금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나, 실제로는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 '동의명령(Consent Order)' 형식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제재이다. 동의명령은 연방 및 개별 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규제 당국과 제재 대상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하면서 그 합의 위반 시 고강도 제재가 가해지도록 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동의명령은 공식적 행정처분이나 재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제재처분의 상당수가 동의명령 및 이와 유사한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6]

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청장은 보험업 허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 정지할

126) Dustin Plotnick(2013), pp. 1375~1376. 다만, 이러한 합의 형식의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최근 미국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에 의해 도이치뱅크, HSBC 및 UBS그룹에 47백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면서 합의 내용으로 Dodd-Frank 법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SEC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Dodd-Frank 법을 적용한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NY Times(2018. 2. 1), "Settlements for 3 Wall Street Banks Hold a Silver Lining") (https://www.nytimes.com/2018/02/01/business/banks-settlements-waiver-cftc-sec.html)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제재를 부과 받게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제재 대상자와 합의(Settlement)의 형태로 위반 행위 시정 및 제재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에 대한 제재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by Insurers)조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뉴욕주 보험법 §2601). 이는 앞서 본 NAIC의 UCSP Act를 수정 채택한 것이다.

뉴욕주 보험법은 7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영업 관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Performed with such frequency as to indicate a general business practice)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 합의 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뉴욕주 보험법상 불공정 합의 관행 여부 판단 시에는 '일반적인 영업 관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행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127]

〈표 V-4〉 뉴욕주 보험법상 불공정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1. 문제되는 보상과 관련된 사실이나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고의로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
2.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4.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함에도, 신속, 공정, 적정한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
5. 과소한 보험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수익자에게 소송 제기를 강요하는 경우
6. 뉴욕주 보험법 제3420조 (d)항 및(f)(2)(A)[128]에 따른 보상범위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7.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금융서비스법 제6조에 의한 독립적 분쟁해결 기구에 분쟁해결신청을 하는 것

127) Halpin v Prudential Inc. Co., 48NY2d 906, 908; Hubbell v Trans World Life Ins. Co., 50 NY2d 899, 901; Dano v Royal Globe Ins. Co., 59 NY2d 827, 829(Belco Petroleum Corp. v. AIG Oil Rig, Inc., 164 A.D.2d 583, 565 N.Y.S.2d 776(1991) 사례에서 재인용)

128) 배상책임보험상 보상범위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이익에 관한 심각한 무시(Gross Disregard)에 해당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동등한 입장에 두고 합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129] 위 불공정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고, 금융청장은 각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1,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109, §2601(c)). 위 제재금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예컨대 여러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별 보험계약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에 보험계약 건수를 곱한 금액이 제재금이 된다. NAIC의 UCSP Act는 총 제재금의 상한을 100,000달러로 정하고 있으나, 뉴욕주 보험법에는 이러한 상한 규정이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보험법 위반행위는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나(뉴욕주 보험법 §109),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뉴욕주 보험법 §2601(c))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중죄(Felony)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대신 동의명령에 의한 거액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재금과는 별도로 불공정 합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험계약자 측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130] 그렇다고 하여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131] 따라서 보험계약자 측은 불공정 합의 관련 보험법 조항 자체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입각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32]

---

129) Payne, A. M., and Wilson, J(2016), pp. 222~223

130) Minton, T. J.(1996)

131) Belco Petroleum Corp. v. AIG Oil Rig, Inc., 164 A.D.2d 583, 565 N.Y.S.2d 776 (1991)

132) 참고로, 뉴욕주의 일련의 판례들은 2601조에 의한 금전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동일한 목적, 즉 일반 대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억지하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Roldan v Allstate Ins. Co. 149 AD2d 20)

4)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뉴욕주 보험법은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규정(약관 준수의무, 요율 산출서 준수의무 등)을 두고 있지는 않다. 대신 뉴욕주는 앞서 본 NAIC의 UTP Act 모델법을 채택하여 뉴욕주 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보험법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행위(Unfair Insurance Trade Practices)를 정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영업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뉴욕주 보험법 Article 24).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법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Defined Violation)과 그 밖의 행위(Determined Violation)으로 구분된다. Defined Violation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며, 보험법 전반에 걸쳐 열거된 금지사항 중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뉴욕주 보험법§2402(b) Defined Violation).

〈표 V-5〉 뉴욕주보험법상 Unfair Trade Practices 유형

조항	내용
§1102(a)	보험회사의 무인가 영업행위
§1214	외국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모집행위
§1217	근거 없는 100달러 이상의 이익제공행위
§1220	협동조합 등 임원의 부정행위
§1313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공개 방법 및 내용 관련 의무 위반
§1322(i)(2)(B)	생명보험회사의 RBC 레벨 관련 사항 공표행위
§1324(i)(2)(B)	손해보험회사의 RBC 레벨 관련 사항 공표행위
§2102	대리점 등의 무인가 영업행위 등
§2117	무인가 보험회사의 영업을 보조하는 행위
§2122	보험판매자의 광고 관련 금지의무 위반행위
§2123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및 비교의무 불이행
§2313(p)	요율 서비스 기관이 '뉴욕주 금융청의 감독을 받는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2324	리베이트 및 차별
§2502	대출 등의 조건으로 특정회사 등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2503	법률상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특정회사 등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표 V-5〉 계속

조항	내용
§2504	공공건설계약 관련 특정 보정회사 등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2601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
§2602	생명보험 관련 리베이트
§2603	허가받은 거래 이외의 거래 관련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
§2604	보험회사의 재무 사항 등에 대한 의도적 허위서류 작성 및 행사
§2606	인종, 피부색, 신념, 출신 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2703	"Holocaust Victim" 관련 보험회사의 의무 위반행위
§3109	협동조합 가입 신청서 허위 기재
§3224a	헬스케어 및 헬스케어서비스 대금지급 관련 신속, 공평, 적정한 합의 관련 기준 위반
§3429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한 화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
§3433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한 보험대리점계약 해지 또는 연장 거부
§3426(e)	보험회사의 갱신거부통지 관련 준수사항 위반
§4224	생명·상해·건강보험상 차별, 리베이트, 모집 관련 금지행위
§4225	대리점에 대한 차별
§4226	생명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비교의무 불이행
§7809	생명보험계약양도(Life Settlement) 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7810	생명보험계약양도 관련 프라이버시 준수사항 위반
§7811	생명보험계약양도 관련 정보제공의무 위반
§7813	생명보험계약양도 관련 일반적 준수사항 위반
§7814	생명보험계약양도 관련 금지행위
§7815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Stranger Originated Life Insurance) 관련 준수사항 위반

주: 이상의 뉴욕주 보험업법 규정 위반 외에 형법(Penal Law) 위반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포함됨

한편, Determined Violation이란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및 관행으로서, Defined Violation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금융청장이 그러한 방법, 행위 및 관행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2402(c)).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청장이 관계자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일 500달러(최대 10,000달러) 한도 내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1,000달러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중지 및 금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5,000달러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2406).

4. EU 및 유럽국가

가. EU

1) 상품규제

EU는 1992년 제정된 제3차 생명보험지침[133]과 제3차 손해보험지침[134]에 따라 각 회원국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규제를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각 회원국은 보험약관, 보험료 수준, 보험료 산출 기준 및 보험계약 체결 양식 등에 대한 사전인가 또는 보고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리와 관련된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료 산출기준 및 보험계약 체결 양식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135] 손해보험의 경우 물가통제시스템의 일환으로서 보험요율 인상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 외에 일체의 사전 보고를 금지하며, 손해보험상품의 보험계약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36]

133) Council Directive 92/96/EEC of 10 November 1992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life assurance and amending Directives 79/267/EEC and 90/619/EEC. 3차 생명보험지침은 이후 생명보험 통합지침(Directive 2002/83/EC)에 흡수됨

134) Council Directive 92/49/EEC of 18 June 1992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insurance other than life assurance and amending Directives 73/239/EEC and 88/357/EEC

135) Directive 2002/83/EC Article 34
Member States shall not adopt provisions requiring the prior approval or systematic notification of general and special policy conditions, scales of premiums, technical bases used in particular for calculating scales of premiums and technical provisions or forms and other printed documents which an assurance undertaking intends to use in its dealings with policy holders.
Notwithstanding the first subparagraph, for the sole purpose of verifying compliance with national provisions concerning actuarial principles, the home Member State may require systematic communication of the technical bases used in particular for calculating scales of premiums and technical provisions, without that requirement constituting a prior condition for an assurance undertaking to carry on its business.

136) Council Directive 92/49/EEC Article 39
1. Article 18 of Directive 88/357/EEC is hereby repealed.
2. The Member State of the branch or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shall not adopt provisions requiring the prior approval or systematic notification of general and

한편, EU의 생명보험통합지침 및 3차 손해보험 지침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적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일반적 법규로서 약관규제지침(Directive 93/13/EEC)이 제정되어 있다. 약관규제지침은 약관조항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선의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해칠 경우 이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금융소비자를 구속할 수 없으나, 그 불공정성을 평가할 때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Article 4).

이상의 EU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괄 규정에 의한 제재는 EU에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EU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제[137]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은 보험금 지급 시기 및 지급 지체 시 가산 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즉, 보험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또는 지급할 보험금액의 확정 후 1주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138] 지급 지체 시

---

special policy conditions, scales of premiums, or forms and other printed documents which an undertaking intends to use in its dealings with policyholders. It may only require an undertaking that proposes to carry on insurance business within its territory, under the right of establishment or the freedom to provide services, to effect non-systematic notification or those policy conditions and other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compliance with its national provisions concerning insurance contracts, and that requirement may not constitute a prior condition for an undertaking's carrying on its business.

3. The Member State of the branch or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may not retain or introduce prior notification or approval of proposed increases in premium rates except as part of general price-control systems.

137) 이하의 내용은 한창희·장덕조·박은경(2011), p. 40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138) Article 6:104 Time of Performance

(1) When a claim has been accepted the insurer shall pay or provide the services promised, as the case may be, without undue delay.

(2) Even if the total value of a claim cannot yet be quantified but the claimant is entitled to at least a part of it, this part shall be paid or provided without undue delay.

(3) Payment of insurance money, whether under para. 1 or para. 2, shall be made no later than one week after the acceptance and quantification of the claim or part of it, as the case may be.

에는 피보험자에게 유럽연방은행의 금리에 8%를 추가한 이율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배상의무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139]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의 경우 보험금 지급 지체 시 가산된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민사적 제재의 기능이 있으나, 이는 감독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국

1) 상품규제[140]

영국은 본래 보험상품 자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규제를 하지 않고, 사후 공시주의를 채택하였으며, 불완전판매 등 판매 이후 단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금융감독기구는 기초서류 변경, 사용정지 명령권 등 규제수단을 갖지 않았으며, 다만 약관규제법과 유사한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2015, 이하 'CRA 2015'라 함)에서 영업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라 함)이 보험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강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하였다. 한편, 영업행위 감독청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수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 효과는 법원으로부터 강제명령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영업행위 감독청은 위와 같은 불공정한 보험약관에 대한 심사권한을 통해 계약 당사자간 권리·의무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불공정성을 평가할 수 없고(CRA 2015

139) Article 6:105 Late Performance8
(1) If insurance money is not pa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04, the claimant shall be entitled to interest on that sum from the time when payment was due to the time of payment and at the rate applied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to its most recent main refinancing operation carried out before the first calendar day of the half-year in question, plus eight percentage points.
(2) The claim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damages for any additional loss caused by late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140) 이하의 내용은 서현재(2016), pp. 24~25, pp. 39~4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Section64 (1)(b)), 보험약관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다.

영국은 2013년 상품개발단계부터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입규정을 도입하고, 영업행위 감독청이 그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상품 개입규정을 통해 판매금지, 내용규제,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에 대한 경고, 판매대상범위 제한, 판매방식 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이 기초서류 내용통제에 관해 갖는 권한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계약 및 보험회사 내부서류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재를 하는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보험금 부지급 관련 규제

FCA가 제정한 "보험업무행위지침"(The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이하 'ICOBS'라 함)은 제8장 보험금 청구에 대한 대응(ICOBS 8: Claim Handling) 부분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공정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을 금지하고 있다.

ICOBS 제8.1조는 "보험자는 ① 보험금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② 보험증권 소지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③ 보험증권의 무효 또는 취소를 포함하여 보험금의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해서는 안 되고, ④ 일단 정산조건이 합의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1] 또한 ICOBS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적격 허위진술(Qualifying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때 적격 허위진술이란 (i) 보험계약자가 2012년 소비자보험법 제2(2)조에서 정한

141) 8.1.1 An insurer must:
(1) handle claims promptly and fairly;
(2) provide reasonable guidance to help a policyholder make a claim and appropriate information on its progress;
(3) not unreasonably reject a claim(including by terminating or avoiding a policy); and
(4) settle claims promptly once settlement terms are agreed.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ii) 허위고지가 아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를 의미한다.[142] 결국 보험계약자 측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한 사항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한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화된다고 보고 있다.

〈표 V-6〉 영국 ICOBS상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2013. 4. 5.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지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중요 사실의 불고지를 이유로 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
- 보험계약자의 과실 없는 중요 사실에 대해 불고지 또는 허위고지를 이유로 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

〈2013. 4. 6.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나 그 위반이 적격 허위진술(Qualifying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 확약이나 조건 위반에 불과한 경우, 단 (i) 보험금 청구의 제반 상황이 그러한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경우, (ii) (a)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그 확약이 피보험자의 진술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또는 (b) 보증이 담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점에 관해 고객에게 충분히 숙지가 된 경우

주: 해당규정 원문은 각주 참고[143]

142) ICOBS 8.1.3
For the purposes of n ICOBS 8.1.2R (2) a "qualifying misrepresentation" is one made by a consumer before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was entered into or varied if:
(1) the consumer made the misrepresentation in breach of the duty set out in section 2(2) of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to take reasonable care not to make a misrepresentation to the insurer; and
(2) the insurer shows that without the misrepresentation, that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or agreed to the variation) at all, or would have done so only on different terms.

143) A rejection of a consumer policyholder's claim is unreasonable, except where there is evidence of fraud, if it is:
(1) in relation to contracts entered into or variations agreed on or before 5 April 2013, for:
(a) non-disclosure of a fact material to the risk which the policyholder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disclosed; or

보험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FC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 이하 'FSMA' 라 함)에 따라 보험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의 벌금(Penalty, in respect of the contravention,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을 부과하거나(FSMA 206조)[144] 보험자의 부당행위를 공표할 수 있으며(FSMA 205조),[145] 피보험자는 제150조에 따라 제소권을 가진다.[146]

(b) non-negligent misrepresentation of a fact material to the risk; or
(2) in relation to contracts entered into or variations agreed on or after 6 April 2013, for misrepresentation by a customer and the misrepresentation is not a qualifying misrepresentation; or
(3) for breach of warranty or condition unless the circumstances of the claim are connected to the breach and unless (for a pure protection contract):
(a) under a 'life of another' contract, the warranty relates to a statement of fact concerning the life to be assured and, if the statement had been made by the life to be assured under an 'own life' contract, the insurer could have rejected the claim under this rule; or
(b) the warranty is material to the risk and was drawn to the customer's attention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144) FSMA 206 Financial penalties
(1) If the Authority considers that an authorised person has contravened a requirement imposed on him by or under this Act, 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in respect of the contravention,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
(2) The Authority may not in respect of any contravention both require a person to pay a penalty under this section and withdraw his authorisation under section 33.
(3) A penalty under this section is payable to the Authority.

145) FSMA 205 Public censure
If the Authority considers that an authorised person has contravened a requirement imposed on him by or under this Act, the Authority may publish a statement to that effect.

146) 150 Actions for damages
(1) A contravention by an authorised person of a rule is actionable at the suit of a private person who suffers loss as a result of the contravention, subject to the defences and other incidents applying to actions for breach of statutory duty.
(2) If rules so provide, subsection (1) does not apply to contravention of a specified provision of those rules.
(3) In prescribed cases, a contravention of a rule which would be actionable at the suit of a private person is actionable at the suit of a person who is not a private person, subject to the defences and other incidents applying to actions for breach of statutory duty.
(4) In subsections (1) and (3) "rule" does not include—
(a) listing rules; or
(b) a rule requiring an authorised person to have or maintain financial resources.
(5) "Private person" has such meaning as may be prescribed.

다. 독일

독일의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이하 'VAG'라 함)은 보험감독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서 벌금(Geldstrafe) 및 과태료(Bußgeld) 규정을 두고 있다. 과태료는 보험영업에 있어서의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en im Rahmen des Versicherungsbetriiebs)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유형에 따라 200,000유로, 150,000유로, 100,000유로, 20,000유로를 그 각각 상한으로 하며(VAG §144, 144a, 144b, 144c), 우리나라와 같이 연간 수입보험료에 연동되는 과징금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5. 시사점

이상의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주요국은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규제 또는 사후규제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형식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았으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한편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유형 중 하나인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대상으로 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무 관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채택한 사례들이 있었고(영국, 미국), 이 경우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었다. 제재 규모는, 영국은 감독당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여 사실상 제재의 상한이 없었고, 미국 뉴욕주의 경우 제재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동의명령이라는 합의의 형식으로 제재금이 부과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과 관계 없이 제재금 수준을 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와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 간에 그 활용방식 및 활용범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우 보험금 부지급 외에도 제재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열거된 사항 외에도 사기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의 경우는 금융청장이 불공정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규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중요한 행위가 제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입법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해외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규정으로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급적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모두 열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규제의 흠결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주 보험법상 UTP 규정과 같이 추상적 요건에 의한 보충적 포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유형 중 보험금 부지급은, 이를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경우 독자적으로 별도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재 대상이 되는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의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부과기준이나 부과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령 및 고시에 의해 기술적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지 않았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과징금 제도 자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웠으나, 미국처럼 제재 대상자와의 합의 형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한 법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Ⅵ.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1.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가. 기초서류 준수의 당위성과 제재 필요성의 구별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의 내용은 어찌 보면 매우 당위적인 것이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기초서류를 작성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위적인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또 기초서류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 위반 시 제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기초서류를 위반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위적이고 당연한 규정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서 제재규정으로서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당위성과 제재 필요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민법의 법언이 그 자체로서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계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한편, 보험계약의 경우 정보비대칭, 지식비대칭, 소비자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같은 포괄적 제재 수단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비대칭과 지식비대칭의 문제는 비단 보험계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금융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금융위기 전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KIKO,[147] ELS[148] 등 파생상품 관련 분쟁이나 최근

147) KIKO는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던 환헤지 목적의 파생금융상품으

불거진 은행의 부당 금리 수취 사태[149]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지식비대칭, 정보비대칭, 소비자보호 필요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원 및 분쟁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나, 보험은 예금이나 증권과 달리 급부의 지급 여부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의 본질상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민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다투어져야 할 사안으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적절한 해결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서류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기초서류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은 문제가 없다거나,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이 정당화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제 자체의 타당성과 별도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법익의 균형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침해를 수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비례원칙의 심사 기준에 따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일률적 제재의 문제점

기초서류에는 필수적 기재사항만도 매우 다양하고,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의 기재사항까지 포함하면 보험상품에 관한 모든 사항이 망라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그 위반에 대한 금전제재는 과징금의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과

로, 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대비하여 KIKO에 가입하였으나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큰 손실을 입게 되었음. 이에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물론, 관련 임직원을 형사고발하였음.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승소하였으나, 형사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음

148) ELS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증권회사들은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설명하여 위 상품 판매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이 승소하였음

149) 연합뉴스(2018. 6. 26), "은행 금리 부당산출 1만건 넘어…'고의 조작' 의혹 확산(종합)"

태료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라는 단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다른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보험업법상 자산운용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수준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공여 위반의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자회사 발행 주식 소유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그 초과 소유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각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게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여 한도를 넘어서는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인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인지에 따라서 부과비율을 각각 30%, 100%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행위의 성격 및 위법성 정도에 따라 각각 별도의 기준금액 및 부과비율을 정하고 있는 반면, 기초서류 준수의무는 그 위반행위 유형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금액 및 부과비율에 의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검사 및 제재규정보다 세분화된 부과기준율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과 부과비율에 의해 과징금의 규모가 큰 틀에서 이미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에 따른 조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시정되기 어렵다.

다.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의 적정성 여부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일반회사의 매출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험업법에서 연간 수입보험료를 과징금의 기준금액으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매출액을 과징금 기준금액으로 한 점을 참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공정거래법 영역은 물론 방송통신법 등 과징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

에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고, 실제 활용가능성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기준이기도 하다.[150]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규제위반행위가 야기한 피해를 위반자에게 내부화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도록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위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151]

이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타당한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위반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피해의 내부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경우에 비로소 타당성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회적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이를 산출하나, 피해의 내부화 및 이를 통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관련 규제가 상품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당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전체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불이익은 매출액을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이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규제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위반행위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과징금 산출의 원리상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에 의한 규제 대상은 상품규제에 제한되지 않고, 분쟁 해결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도 모두 포함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보험금 미지급이 문제되는 경우 상품 자체의 문제로서 상품규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별 보험계약 내용의 해석 및 보험사고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일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상품규제보다는 분쟁해결 관점에의 접근이 필요하다.

150) 김일중(2017), p. 5
151) 김일중(2017), p. 34

이러한 규제 대상 행위들의 이질적 성격으로 인해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산출의 적정성 여부도 대상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나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 관련 기준 위반과 같이 그 위반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정경쟁 질서를 어지럽혀 시장 및 소비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고 이를 통해 당해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절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보험금 미지급과 같이 특정 개별 사안과 관련된 규제 위반행위로서, 공정경쟁질서와 직접 관련이 없고, 당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전체의 불이익이 사업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산정은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다.

라. 명확성 원칙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이 형벌법규인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고 있다.[152] 또한 ‘이러한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법치국가원리의 요청이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입법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153]

행정상 제재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인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록 제재처분 역시 행정권에 속하는 것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따라서 형벌법규에 대해 요구되는 정도의 엄격한 명확성 원칙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

152) 헌재 1992. 4. 28. 90헌바27
153) 헌재 1998. 4. 30. 95헌가16

도, 제재 대상자 및 제3자가 관련 법규의 내용을 보아도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이러한 규정은 '적용 대상자의 행동 지침'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법집행자의 객관적 판단 지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전문성, 기술성, 시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제재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재 대상자가 해당 제재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아무런 내용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재대상자의 행위 지침 및 법집행자의 판단지침으로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만 있으면 보험회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거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이 제재의 만능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마. 과징금 상한 인상의 효과

2017년 4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11개 금융관련법령상 과징금 수준을 일괄 상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방법을 정한 검사 및 제재규정과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도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령 및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금융 관련 법령상 부과되는 과징금이 2~5배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칙 규정에 의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 부과됨에 따라 아직까지 개정 규정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사례에 한함)는 없으나, 조만간 과징금 부과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 종전 규정 기준 최대 금액인 7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인 사례 38의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금액이 140억~350억 원까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약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 12의 경우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0억 원까지 과징금 금액이 인상된다.

과징금 인상은 금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이 공정위나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이나 영국·미국 등 해외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경우 보험업법과 달리 과징금 부과 대상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비율을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금전제재의 기능 및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경우 은행 및 증권회사에 대해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과징금 부과 사유도 다양하다. 자금세탁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액의 금전제재를 하기로 유명한 뉴욕주의 경우, 정작 보험업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사 금전제재는 개별 위반행위 1건당 1,000달러에 불과하다. 실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보면 주로 투자은행의 사기적 행위가 문제된 사례가 많은데, 정작 우리나라의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은행법은 자산운용기준 위반에 대해서만 위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기준 위반 및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억 원~20억 원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5억 원 또는 이익금액의 1.5배를 과징금 상한으로 정함으로써 고액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은 타 금융업권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에 비해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수준도 매우 과도하다. 개정 전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도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 개정된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물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 중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고액의 과징금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그러하다고 볼 수 없고, 고액 과징금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면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정함이 마땅하다. 금전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면 부과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금전제재 부과 대상을 다양화하고, 그 행위 유형에 맞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2. 개선방안

가.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제재대상 행위 분리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자체는 원칙 규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초서류 위반 자체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현행 규정은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내규의 성격을 갖는 사업방법서 및 산출방법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약관 내용을 위반한 것을 법령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재를 부과할 경우, 감독당국은 특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고자 할 경우 법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기초서류에 해당 내용을 반영토록 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의 우려마저 유발한다. 따라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라는 원칙 규정과,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금지행위 규정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원칙규정과 제재대상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보험업법 제127조의5 이하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포함되는 사항들 중 과징금 제재가 필요한 사항들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27조의5 이하의 조항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열거하고, 과징금 부과규정인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를 9의1호 내지 9의[*]호로 분리하여, 보험업법 제127조의5 이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중 과징금 제재가 필요한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재 필요성이 명확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위에서 열거된 행위가 아닌 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나.~라.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나. 제재대상 행위 유형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행위의 특성, 제재 필요성에 따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1) 행위 특성에 따른 유형화

가) 기초서류 종류에 따른 유형화 방안

행위 특성에 따른 유형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위반의 대상이 된 기초서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사업방법서 위반, 약관 위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위반으로 구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초서류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각 내용을 개별 행위 유형으로 보는 것이다.

〈표 Ⅵ-1〉 기초서류 종류 및 각 필수기재사항

유형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산출방법서
의의	사업운용의 기본방침을 기재한 서류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기초율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서류
필수 기재 사항	• 지역 • 보험종목 • 보험목적의 범위 • 점포 • 보험금액, 보험기간 • 보험계약 체결 절차 • 보험수수료 및 환급 • 약관대출 • 보험계약의 변경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계약 무효사유 • 보험회사 면책사유 • 보험회사의 의무 범위 및 시기 • 보험계약자의 의무 불이행 시 손실 • 보험계약 해지의 원인과 효과 • (유배당) 배당 범위 • (실적연동)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 • 예금자보호 등 계약자 권익 보호	•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금 및 보험료 변경 시 그 계산에 관한 사항 • 보증비용 부과 시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사업방법서는 주로 보험회사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산출방법서는 보험료 등 계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각 기초서류는 내용 면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기초서류 종류에 따라 제재 대상 행위를 유형화할 경우 그 행위의 기본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동일한 내용이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에 중복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방법서 기재사항과 보험약관 기재사항 구별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는 점, 기초서류 유형에 따른 구분이 제재의 필요성이나 수단의 차별성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점이 있다.

나) 보험상품 개발, 판매, 유지, 이행 단계별 유형화

보험상품이 개발, 판매, 유지, 이행 및 소멸되는 과정에 따라 관련 기초서류 위반행위를 유형화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①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당해 상품에 대해 기초서류가 작성이 되면(상품 개발), ②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등 마케팅을 하고(광고 및 홍보), ③ 잠재적 고객을 발굴하여 가입을 권유하며(모집), ④ 고객이 보험가입 의사가 있을 경우 고객의 니즈에 따라 주계약 및 특약 등 상품을 구성한다(상품구성).[154] ⑤ 고객의 보험 가입의사가 구체화되면 당해 고객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고(보험료 산출), ⑥ 산출한 보험료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며(보험계약 체결), ⑦ 보험계약 체결 이후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보험료 징수). ⑧ 보험계약 체결 이후 미리 정한 사업방법서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옵션매입비용 산출, 공시이율 산출, 확정배당 원리금 산출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보험계약 운영), ⑨ 보장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문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보험금 청구업무 처리), ⑩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금 지급).

154) 상품 구성은 모집 이전에 사전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 과정에 따라서 보장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 이후 단계로 봄

〈표 Ⅵ-2〉 단계별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규제

구분	업무	관련 규제	보험업법 등 근거규정 또는 관련 기초서류
1	상품개발	기초서류 내용 규제	**보험업법 제7장 감독** 제127조(기초서류신고)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 기준) 제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2	광고	광고 규제	**보험업법 제4장 모집**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3	모집	모집 규제	**보험업법 제4장 모집** 제95조(보험안내자료)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4	상품구성	-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155] **사업방법서**
5	보험료 산출	요율 규제	**보험업법 제7장 감독**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제70조[156] **산출방법서**
6	보험계약 체결	모집 규제	**보험업법 제4장 모집**[157]
7	보험료 징수	-	**약관**
8	보험계약 유지 및 운영	-	**사업방법서**(ex. 확정배당원리금 부지급) **약관**(ex. 갱신보험료 서면 안내절차 위반) **산출방법서**(ex.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
9	보험금 청구업무 처리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제 (설명 의무)	**보험업법 제4장 모집**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158] **약관**(ex. 보험계약 부당해지 등)
10	보험금 지급	-	**약관**(보험금 부지급)

155)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성에 관한 규제임. 그 밖의 다른 보험상품 구성에 관해서는 감독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156) 해당 규정은 주로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보험료 산출에 관한 규정은 아님

157) 보험업법 제4장은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 10단계의 과정 중 상품개발, 광고, 모집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업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보험계약의 유지 및 운영, 보험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상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영역에 해당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감독당국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을 근거로 제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표 Ⅵ-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사례 유형

위반유형	위반행위	관련 사례
상품구성 관련 부당행위	상품구성 기준 위반	1, 2, 3, 4, 5, 6, 13
	보험료 비중 위반	1, 2, 3, 4, 5, 6, 13
	보장성 기준 위반	2, 11
보험계약 유지·운영 관련 부당행위	확정배당원리금 부지급	7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	10
	책임준비금적립업무 불철저	10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12
	갱신보험료 서면 안내절차 위반	12
	이자지급업무 부적정	38, 46
보험료 산출·징수 관련 부당행위	보험료 부당산출	15, 24, 25, 26, 27
	보험료 부당징수	9, 15
	보험료 납입최고업무 불철저	19
	보험료 납입면제의무 부적정	46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계약 부당해지	16, 17, 28, 38
	보험계약 특약 부당해지	38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14, 29, 30, 31, 32, 33, 34, 35, 36, 37, 40, 41, 42, 43, 45
	보험금 미지급(재해사망보험금 外)	8, 16, 17, 39
	보험금 부당삭감	18, 20, 21, 22, 23, 26, 27, 44, 46
	보험금 지급 안내 업무 불철저	38

158)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이 부분은 체계상 모집에 관한 사항은 아니나, 설명의무의 한 내용으로 규정함에 따라 모집부분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① 상품 구성 관련 부당행위, ② 보험계약의 유지·운영 관련 부당행위, ③ 보험료 산출·징수 관련 부당행위, ④ 보험계약 해지 관련 부당행위, ⑤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재 필요성에 따른 유형화

다음으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과징금 제재가 필요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제재 필요성 여부는 ① 과징금 제도의 효과성 여부와 ②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과징금 제도의 효과성

과징금 제도의 효과성은 과징금 제도를 통해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과징금 제도가 효과성을 갖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첫째,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이 막대하여 벌금이나 과태료같이 법령에서 미리 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금전제재로는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운 경우이다. 특히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 금전제재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제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과징금 제재가 실효적이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과징금 제재가 이러한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둘째,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이러한 처분을 활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에 대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업정지처분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159]

그렇다면, 과징금 제도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은, (i)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

159) 이원우(2006), pp. 59~60

이 매우 커서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금전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재 대상자의 경제력 규모에 따라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ii) 영업정지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험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중 자산운용방법 위반의 경우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훼손하여 대주주 등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이해상충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에 상응하는 고액의 금전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광고 및 모집 관련 규제 위반의 경우도 이러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 위반을 통해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침해하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고액 금전제제 부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보험금 부당삭감, 확정배당원리금 부지급, 보험료 납입 면제업무 부적정 등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급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객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급부를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되므로 그 규모에 상응하는 고액 금전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료 산출·징수 위반의 경우, 보험료를 과다 산출·징수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만큼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 규모에 비례하는 금전제재 부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보험료 과소 산출·징수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비례하는 금전제재 부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과소 산출·징수는 일반 상품의 가격 할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격 할인만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가격 할인이 보험업법 제129조에서 정한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로소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위반금액에 비례하는 금전제재보다는 정액의 과태료나 비금전제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보험료 과소 산출·징수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 과소 산출·징수 금액에 비례하는 금전제재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적정한 제재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상품구성 기준 위반, 보험료 납입최고업무 불철저,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갱신보험료 서면 안내절차 위반 등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에 상당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 등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기초서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또는 고액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대규모 부당이득이 예상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재가 효과적이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재보다는 비금전적 제재가 더욱 적합할 것이다.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대상 행위가 과징금에 의한 제재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법규 위반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과징금 제재가 반드시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액의 과징금 부과 대상은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되어 고액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여 경미한 행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규위반행위가 행정목적과 사회공익 침해에 까지 이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단순한 의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정 행위가 중대한 행위인지 경미한 행위인지 여부를 그 행위 유형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약관의 명시적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한 경우나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보험료 부당산출·징수나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등의 경우에는 그 행위유형 자체만으로

는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당산출·징수나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다만,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본 과징금 부과의 효과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이외에 다른 비금전적 제재수단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3) 유형화 방안 제안

가) 위반유형 세분화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준으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을 ① 상품구성 관련 부당행위, ② 보험계약 유지·운영 관련 부당행위, ③ 보험료 산출·징수 관련 부당행위, ④ 보험계약 부당해지, ⑤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표 Ⅵ-4〉 유형화 방안

위반유형	구체적 위반행위(사례 참고)	부당 이득	재무 건전성 침해	위반의 중대성	과징금 부과 필요성
상품구성 관련 부당행위	상품구성기준 위반	×	○	△	-
	보험료 비중 위반	×	○	△	-
	보장성 기준 위반	×	○	△	-
보험계약 유지·운영 관련 부당행위	확정배당원리금 부지급	○	×	○	부과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	△	△	△	부과*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	○	○	부과*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	△	△	부과*
	갱신보험료 서면 안내절차 위반	×	×	△	-
	이자지급업무 부적정	△	△	△	부과*
보험료 산출·징수 관련 부당행위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과다)	○	×	○	부과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과소)	×	○	△	-
	보험료 납입최고업무 불철저	×	×	△	-
	보험료 납입면제업무 부적정	○	×	○	부과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계약 부당해지[160]	○	×	○	부과
	보험계약 특약 부당해지	○	×	○	부과
보험금지급 관련 부당행위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	×	○	부과
	부당한 보험금 삭감	○	×	○	부과

기초서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부당이득이 있는 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있을 수 있는 행위(△), 또한 그 행위 유형 자체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서 보험계약자 보호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부당이득이 없는 행위이지만(×)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제재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징금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행위 양태에 따라 부당이득 여부나 중대성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행위 유형의 경우(즉, 부당이득과 중대성이 모두 △인 유형)에는 실제 부당이득이 있는지 및 그

160) 보험계약 해지 자체로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거절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보험금 지급거절과 동일하게 봄

위반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 측의 권리의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 요건으로 채택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나) 보충규정 도입 및 '중대성' 요건 추가

앞서 열거한 세부 위반행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열거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일본 보험업법의 제133조와 같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뉴욕주 보험법의 Determined Violation(§2402(c))과 같은 일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반규정의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뉴욕주 보험법처럼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및 관행'이라는 요건을 두는 방법과, 일본 보험업법처럼 기초서류 위반 자체를 요건으로 하되, 제재 대상을 '특별히 중요한 사항 위반'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의 특성을 불공정성, 사기성, 관행성 등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기초서류 준수의무 제도 도입 당시 감독 당국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에 준하는 보험회사의 고의적 부당행위'를 제재대상으로 삼고자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독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반면, 제재 요건을 보다 넓게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후자와 같은 방법도 채택 가능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관련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시서류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아닌, 그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이를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과징금 부과사유로 정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이처럼, 다른 법령의 경우 제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에는 '중대성' 요건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라는 추가적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중대성'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가 다시 문제될 수 있고, 중대성 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게 되면 앞서 과징금 부과대상을 세분화한 것도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 된다.

중대성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본의 해석론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중요성'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중요 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대법원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중요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161] 이는 공시제도의 목적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입각한 것이다.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기초서류 관련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중요성 요건의 해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목적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중대성 요건은 그 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①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② 보험업법 제129조에서 정한 요율산출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정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보험거래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재무건전성에 현실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무건전성 확보에 과징금이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는 의문이다.

16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판결

다.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별도 규제 도입

1) 별도 규율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46건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사례 중 보험금 미지급이 19건, 보험금 부당삭감이 9건에 이른다. 보험금 부당삭감도 보험금 일부 미지급이므로,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전체 사례의 절반이 넘는 셈이다. 또한, 기초서류 준수의무 도입 당시 감독당국의 보도자료를 보면 당초 제재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사항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에 준하는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보험금 부지급이었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 사례에서 보험금 부지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보험금 부지급을 명시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규정으로 이를 제재하고 있다. 규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위 규정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부 금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문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이는 별도의 명확한 근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만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규정 체계하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한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이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제재 근거 규정이라는 점 자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규범의 내용이나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2)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 여부

가) 민사 법률관계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문제점

보험금 부지급 문제는 보험계약의 해석, 적용 및 그에 따른 이행 여부의 문제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으로써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인 보험금 부지급은 원칙적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의 제도를 보더라도 보험금 부지급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별도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간을 끌거나, 합리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필요한 분쟁해결절차 등을 진행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16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권리법(CRA 2015)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청(FCA)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으나, 약관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적용에 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경우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특별히 중대한 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 부지급 자체를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고 나아가 이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상당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을 통해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162) 영국의 ICOBS 규정 및 미국 NAIC UCSP Act 모델법 내용 등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 다툼이 있고 이러한 해석상 문제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독당국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는 앞으로도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적어도 제재의 실질에 맞는 근거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그 제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민사 법률관계에 대한 공법적 규율 적용 사례

이례적이긴 하나 다른 법령에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들이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163]이 없는 한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3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민사상 계약 불이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사 법률관계에 대해 행정기관의 개입을 허용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i)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상

16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해당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해 온 점, (ii) 수급사업자들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당사자 간의 사적 해결이 쉽지 않은 점, (iii) 경제성장에 따라 하도급거래 비중이 증가하였음에도 경제적 약자인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 점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 관계에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이례적인 법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164]

그러나, 위와 같은 하도급법상 규제가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실제 관련 제재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를 대등한 지위에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제도가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에 해당하여 헌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65] 그럼에도, 하도급법상 제재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민사상 재판청구권 침해, 절차적 보장 측면의 문제, 권력분립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166]

다)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공법적 규율 필요 여부

보험금 부지급은 원칙적으로 민사 법률관계로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재판 등 민사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대하여 공법적 규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예와 마찬가지로 공법적 규율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i)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이 빈번하고, (ii)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종속된 관계이며, (iii)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비해 경제적

164) 이문성(2017), p. 331

165)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8778판결. 이 판례는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민사 법률관계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 제재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166) 이문성(2017), p. 332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민사적 법률관계를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실제로, 보험 관련 민원, 특히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 건수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현저히 많은 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지식비대칭 및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므로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이 보험금 부지급 제재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보험에 대해 민원이 더 많은 것은 일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급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상품 특유의 속성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 또한, 지식비대칭 및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보험에 한정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 및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적절히 해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는 하수급인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하수급인으로서는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부득이 원사업자에 종속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보험회사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험금 부지급 문제에 대해 공적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제재 대상이 되는 보험금 부지급의 범위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부지급 문제에 대해 감독당국이 분쟁해결수단이 아닌 행정상 제재수단을 통해 개입하고자 할 경우, 그 제재 대상이 되는 보험금 부지급은 고의적이고 명백한 약관 위반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제도 도입 당시 감독당국이 밝힌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에 준하는 정도의 고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으로 제재 대상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험약관의 해석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례처럼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법원의 재판 등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러한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이 명백함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보험금 지급 여부가 소송절차를 통해 다투어진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부지급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명백하게 약관에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록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약관의 해석 여부나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편,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 및 지급 거절 및 감액 지급 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의무 등은 보험업법 제95조의2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 설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약관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에 의해 제재를 함이 타당하다. 만약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의 적절한 채권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부지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4)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제재 수단

보험금 부지급 문제에 대해 공법적 규율을 적용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것인지가 다시 문제된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미지급된 하도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제도 역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하도급법과 같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보험업법상 시정명령제도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의 한 내용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급명령은 보험금 미지급 상태를 시정하는 효과를 가질 뿐 추가적인 제재의 효과가 없어 위법행위 억제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회사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현저히 침해되어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서는 이러한 침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등 제재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지급 보험금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한 위법행위 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 행위유형별 과징금 산출방법 차별화

1) 기준금액의 차별화

가) 보험금 부지급: 부지급 보험금 금액

앞서 본 것처럼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에 준하는 보험회사의 고의적, 악의적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에 맞는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부지급 또는 삭감한 보험금 금액이 곧 보험회사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부과비율은 부지급 또는 부당삭감한 보험금 보다 과징금 금액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기준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 금액이 결정되고, 이후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 50% 내외의 가중·감경 절차를 거치는 현행 과징금 산출 체계 하에서는,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과징금의 법정 상한액은 최소한 부지급 보험금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2배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보면, ① 먼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여야 하는데,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경우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대금의 비율이 위반비율이 되고, 결과적으로 미지급 하도급 금액의 2배가 기준금액이 된다. ② 다음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되는 부과기준율을 곱

하게 되는데,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60%~80%,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0%~60%, 중대서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40%의 비율을 부과하되, 다만 50% 미만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167]보다 작은 경우,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해 50% 이하의 낮은 부과비율을 적용해야 할 경우 기본과징금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하한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하도급법상 기본과징금 산출 방식을 참고하여, 보험금 부지급 시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미지급 보험금의 2배로 정하고, 여기에 중대성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하되, 부지급 보험금 금액을 기본과징금의 하한으로 정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보다 부합하는 과징금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보험금 부지급을 별도로 규율할 경우 현행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부과기준율과 별도의 부과기준율 체계를 도입하거나, 검사 및 제재 규정상의 과징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기타 유형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과징금 산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크게 ① 보험상품 자체와 관련된 행위와 ② 개별 보험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상품 자체와 관련된 행위는 특정 규제 위반행위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 보험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별 보험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행위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②-1)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②-2)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행위 유형 중 (i) 상품 구성 관련 부당행위는 그 자체로서 보험상품 자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ii) 보험계약 유지·운영 관련 부당행위는, 동

167) 법 위반행위로 인해 당초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함

종 보험계약 유지·운영 관련 업무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특정 개별 보험계약의 유지·운영에만 관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는 영업 관행으로서의 성격이 없는 개별적, 구체적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iii)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의 경우도 특정한 개별 계약에 대해 보험료가 잘못 산출되거나 징수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지 않고, 이러한 부당 산출·징수가 관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수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행위가 보험상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①)는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특정행위가 그 횟수, 관행성 여부 등에 따라 보험상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개별 특정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우에는(②-1),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영업 관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경우에는 상품 자체 또는 영업 관행상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관련 매출액에 대응되는 개념인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현행 부과비율 50%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는 보다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고, 보험금 부지급을 별도 규제 대상으로 제외할 경우 보험금 부지급 이외의 제재 대상에 대해 50% 부과비율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부과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 된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총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총 수입보험료의 5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모집 관련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총 수입보험료의 50%의 과징금이 부과된

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모집 관련 규제 위반이 중한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높은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이나 모집 관련 규제 위반은 개별 계약 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는 과징금 기준금액으로 너무 낮은 기준이기 때문에 총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이처럼 보험사고가 발생한 개별 계약 건에 대해서만 문제되는 행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총 수입보험료 또는 보험가액 또는 보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다) 연간 수입보험료 산정 관련 세부 기준

현행 보험업법은 과징금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보험료'라고 정하고 있으나, 연간 수입보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험료가 가장 높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연간 수입보험료의 의의 및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168] 예를 들어, 즉시연금과 같은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일시납 보험료를 보험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납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주계약과 특약이 있고, 기초서류 위반행위가 주계약 또는 특약 중 어느 하나에만 관련된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 또는 특약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1년이 되기 전에 해지, 철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유지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시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들도 함께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정치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68) 이하의 내용은 보험연구원 심포지엄(2018. 5. 2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유) 율촌의 신영수 변호사의 토론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2) 가중, 감경 및 면제 사유

현재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가중사유로는 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후 3년 내에 재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과징금 감경사유로는 자발적 시정, 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공적 등이 있다. 또한 부과과징금 결정 시 제재 대상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징금 가중, 감경 및 감면 사유는 보험금 부지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특별한 가중, 감경 및 면제사유를 둘 필요가 있다. 보험금 부지급의 경우에는 부지급한 보험금 금액이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부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만약 과징금 부과 처분 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부당이득 환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일[169]전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보험금 상당액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10억 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 보험금의 2배인 20억 원에 일정 부과기준율(예를 들어 80%)을 적용하고 별도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 과징금 부과액은 16억 원이 될 것인데, 처분 기준일 이전에 미지급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였다면 부과과징금은 16억 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이 될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은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1. 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그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더

169) 소송의 경우 통상 변론종결일이 기준일이 되는데, 과징금 부과의 경우도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이상 제재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보험금 부지급의 경우도 조사 개시일 또는 금융위(또는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Ⅶ. 결론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및 관련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의 규정으로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 유형들을 하나의 규정으로 묶어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부과의 부당성 문제도 다양한 행위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한데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현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단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이상,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에서 아무리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더라도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고, 법령 개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자체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뭉뚱그려 제재를 가하고 있는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자체와 관련된 행위, 개별 보험계약 유지·운영과 관련된 행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 중 상품 자체와 관련된 행위, 또는 개별 보험계약 유지·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보험회사의 영업관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부과비율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별 보험계약 유지·운영과 관련된 행위 중 보험회사의 영업 관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개별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은 적절하지 않고, 총 수입보험료 또는 보험가액이나 보험금액 기준의 과징금 산출방식이 더 적합하다. 끝으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제재는, 그 제재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어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모든 제재는 그 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금융제재, 특히 보험제

재의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큰 목적하에, 지식비대칭, 정보비대칭, 보험회사의 기존 영업행위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규정이라는 다소 이례적이고 독특한 규정이 도입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가 반드시 효과적인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수범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지며, 포괄적 제재 대상에 대해 일률적 제재규정을 적용할 경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법행위 경중에 부합하지 않는 제재를 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이라는 포괄 규정은 원칙 규정으로 삼고, 제재 대상행위는 별도로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제재 대상에 따라 적합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오승 외 4인(2003),『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금융위원회(2017),「보험회사에 대한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제영향분석서

_____(2017),「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김동희(2007),『행정법II』, 제12판, 박영사

김일중(2017),『과징금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김태우(2013),「과징금 제도의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법제』

박윤흔(1990),「미국의 민사금전벌 연구」,『미국헌법연구(1)』, 미국헌법학회

박해식(200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법제처·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서울행정학회(이원희·김봉환·박종혁)(2013),『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법제처 정책연구과제

서현재(2016),「보험상품 심사절차의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대규·안종민(2015),『한국보험업법』, 개정2판, 두남

안수현(2008),「금융행정집행수단으로서 과징금 제도 검토-2007년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BFL』, 제32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유진희·최지필(2013),「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비교사법』, 제20권 1호(통권 60권)

이문성(2017),「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명령에 관한 연구」,『경제규제와 법』, 10권 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이봉의(2011),「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경쟁법연구』, 24권, 한국경쟁법학회

이성남(2010),「2010년 개정 보험업법에 관한 고찰」,『보험법연구』, 제4권 2호

이성남·김건(2003),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이용찬(2007), 「금융업법상 금전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9권 제3호, 중앙법학회

이원우(2010), 『경제규제와 법』, 홍문사

_____(2006), 「현행 금융감독법상 과징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BFL 제1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이홍무(2007), 「일본 보험업계 신뢰회복의 해법과 시사점-금융청의 부활과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제457호, 손해보험협회

장경환·유주선·최병규·김은경(2016), 『독일 보험감독법(VAG)』, 법무부

정채웅(2017), 『보험업법 해설』, 진한M&B

최영주(2016), 「금융법상 제재와 그 절차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제57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2014),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금융업 금전적재제 제도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한국증권법학회(윤세리·권재열·이원우)(2004), 『금융규제법상 과징금 제도 개편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한창희·장덕조·박은경(2011), 『각국의 보험소비자 보호법제』, 청목출판사

홍대식(2011),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방안」, 『IT와 법 연구 5』,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_____(2006),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EU, 독일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14권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list.jsp)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Demneck, J.(2008), *Insurance Nutshell*, Debevoise & Plimpton LLP

Minton, T. J.(1996), "What's new in unfair claims practices", 25-SUM Brief 22,

American Bar Association

Payne, A. M., and Wilson, J.(2016), *New York Insurance Law*, Volum 31, 2016-2017 Edition, Thomson Reuters

Plotnick, D.(2013), "Agency Settlement Reviewability", *Fordham Law Review*, Vol. 82 Issue 3, Article 6

石田 満(2015), 保險業法, 文眞堂

부록: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사례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1	2012. 1. 25.	한화 손보	사업방법서 위반	기업사랑 종합보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담보 중 3가지 이상 조합하여 판매하고, 화재담보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10백만원	1597건	2,002백만원	
2	2012. 4. 18.	현대 해상	사업방법서 위반	하이기업 종합보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재산손해, 배상책임, 기계손해, 기업휴지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로 가입하고, 3가지 중 1개 담보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을 것	128백만원	총 40건 (14건)[170]	104백만원 (24백만원)	
				하이라이프성공시대 등	보장성기준	보장성보험의 경우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설정되어야 함에도, 배서시스템 변경/전산시스템 검증 소홀로 인해 보장성 기준 위반		201건[171]	465백만원	
								219건[172]	406백만원	
3	2012. 6. 15.	동부 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동부*** 보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화재, 기업휴지, 영업배상책임, 기계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을 것	13백만원	125건 (26건)	620백만원 (98백만원)	
4	2012.	메리츠	사업방법서	****	상품구성기준/	화재, 기업휴지, 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미부과[2]	7건	13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6. 15.	화재	위반	종합보험	보험료비중	기계손해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		(2건)	(5백만원)	
5	2012. 6. 26.	롯데 손보	사업방법서 위반	롯데***종합보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화재, 기업휴지, 영업배상책임, 기계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이 중 1가지 당보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백만원	129건 (64건)	537백만원 (146백만원)	
				*** Insurance Policy		재산종합위험, 기계위험,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담보 중 3가지 이상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		1건 (0건)	18백만원 (0백만원)	
6	2012. 6. 26.	삼성 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삼성 ***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화재, 기업휴지, 배상책임, 기계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백만원	39건 (18건)	37백만원 (16백만원)	
7	2012. 9. 14.	교보 생명	사업방법서 위반	**보험 등 9개	확정배당 원리금 부지급 (전산오류)	금리차확정배당금[173]은 "확정배당원금을 매년 정기예금금리+1%로 부리한 이자는 매년 연금 또는 생활자금 지급 시 지급하고, 원금은 보험계약 소멸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배당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확정배당이자는 매년 연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확정배당원금은 보험계약 소멸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확정배당원리금 지급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993. 5. 6.~2011. 10. 31. 기간 중 총 5,348건의 확정배당원리금 1,09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290백만원	5,348건	(2,776 백만원)	
8	2012. 12. 14.	롯데 손보	약관 위반	무배당 롯데	보험금 부지급	"이륜차 운전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관리하지 아니	6백만원	59건 (46건)		98백만원 (55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성공시대 보험 등 19개		하고 일회적 사용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회적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9	2013. 2. 15.	AIA	사업방법서 위반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보험 등 39개	보험료과다·과소영수	사업방법서상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2%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할인이 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함으로써 할인대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과대영수하고, 일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과소 영수함[174)]	221백만원	과다영수 1,153,268 (8,723건)		과다영수금액 2,808.5백만원 (1.5백만원)
								과소영수 706,068건 (1,601건)		과소영수금액 1,219.2백만원 (0.2백만원)
10	2014. 3. 19.	알리안츠	산출방법서 위반	(무)알리안츠파워넥스연금보험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위반	산출방법서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가지수연동이자 결정을 위해 그 재원인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명시된 옵션매입비용보다 과소, 과다 매입함	237백만원	과소매입 37회	(12,644백만원)	과소매입금액 673백만원
								과다매입 27회		과다매입금액 791백만원
				-	책임준비금적립업무불철저[175)]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계상해야 함에도, 2008회계년도 31백만원, 2009회계년도 57백만원, 2010 회계연도 72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함*(기초서류 위반을 적시하였으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	-	-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11	2014. 3. 26	LIG 손보	사업방법서 위반	무배당 LIG 생활보장 보험 외 10개	보장성기준위반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설정되어야 함에도, 전산시스템 검증을 소홀히 하여 보장성 보험 기준을 위반함	5백만원	140건 (122건)	187백만원 (167백만원)	
12	2014. 3. 26.	동부 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무배당 프로미 라이프 웰스 파트너 등 42개	공시이율결정 부적정	금리연동형 장기손해보험계약의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가중평균)의 80~120%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매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산출방식 대비 최소 0.44%p, 최대 1.48%p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관련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최종공시이율을 공시기준이율의 상한범위보다 최소 0.1%p에서 0.5%p 높게 결정하였음	820백만원	2,376천건 (1,868천건)	1조5,644억원 (9,478억원)	
			약관 위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건강 보험 0704 등 23개	갱신보험료서 면안내절차 위반	약관상 갱신대상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갱신안내기한 대비 최소 1일에서 최대16일까지 서면안내발송을 지연하였음	미부과	13,937건	5,048백만원	
13	2014. 3. 26.	흥국 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마이비지니스종합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하며, 이중 1개 담보의	3백만원	15건 (10건)	80백만원 (47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보험(금융기관용)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				
				Package Insurance Policy		재산, 기계, 휴업,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함에도 3개 미만 위험을 결합하여 판매함		1건 (0건)	55,936,110원 (0원)	
14	2014. 8. 27.	ING 생명	약관 위반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부지급	약관 12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고 건에 대하여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49백만원	428건 (2004/3/25~2013/9/13)	357백만원 (2011/1/24 ~ 2013/9/13)	보험금 43,228백만원 지연이자 12,841백만원 (2004/3/25~2013/9/13)
15	2014. 10. 22.	현대 해상	약관 위반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 할인 (적립대체형 추가납입형) 특별약관	보험료 과다징수	실손의료보험 최초 갱신 시 보험료 할인대상계약의 무사고 판정기간은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90일 전 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로 적용함으로써, 할인대상인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하여 할인율(10%)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7.6백만원을 과다징수함	61백만원	-	611백만원	7.6백만원
			산출방법서 위반	-	보험료 부당징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실시한 19개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1,363대의 입찰보험료에 대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증하지 않고 입찰토록 함으	32백만원	414건	238백만원	과다부과 17백만원 과소부과 13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로써 414대 차량에 대해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232건(1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부과하고 182건(13백만원)의 보험료를 과소부과함				
16	2015. 1. 22.	한화 생명	약관 위반	**보험 계약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금 미지급	2010. 7. 1.~2013. 8. 30.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68건(연간수입보험료 2억52백만원)에 대하여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미고지 등이 회사가 정한 계약인수지침의 인수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부 해지함	24백만원	68건	2억52백만원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2011. 6. 3.~2013. 6. 27.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계약 13건(연간수입보험료 26백만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지처리(4건)하거나 보장을 제한(보험금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 10건, 17백만원)함		14건	26백만원	
17	2015. 9. 21.	미래 에셋 생명	약관 위반	-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금 미지급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위반내용이 회사의 계약 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전부해지할 수 있음에도, 2011. 10. 8. ~ 2014. 10. 15. 기간 중 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혈압치료사실 등을 이유로 11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한 사실이 있음	5백만원	11건	-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2011. 10. 8.~2014. 10. 15. 기간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35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보험금 부지급 5건, 50,092,282원)한 사실이 있음		35건	-	50백만원
18	2015. 12. 30.	흥국화재	약관 위반	-	보험금 부당삭감	2012. 1. 2.~2014. 10. 23. 기간 중 23명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직업변경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140백만원 중 930백만원만 지급하는 등 21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함	4백만원	23건	23백만원	210백만원
19	2016. 1. 27.	AIA	약관 위반	무배당 평생설계 보험 등	보험료 납입최고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AIA는 무배당평생설계보험 등 총 3,747건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	미부과 176)	3,747건	-	-
20	2016. 2. 26.	KB손보	약관 위반	-	보험금 부당삭감 (244백만원)	2013. 1. 23.~2015. 4. 13. 기간 중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 병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936백만원 중 692백만원만 지급하	22백만원	97건	-	244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고 244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21	2016. 2. 26.	롯데 손보	약관 위반	-	보험금 부당삭감 (191백만원)	2013. 1. 25.~2014. 12. 23. 기간 중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고의사고 추정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356백만원 중 165백만원만 지급하고 191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삭감한 사실이 있음	5백만원	28건	-	191백만원
22	2016. 2. 26.	메리츠 화재	약관 위반	-	보험금 부당삭감 (204백만원)	2013. 1. 31.~2015. 4. 13. 기간 중 13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658백만원 중 454백만원만 지급하고 204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삭감한 사실이 있음	17백만원	130건	-	204백만원
23	2016. 2. 26.	현대 해상	약관 위반	-	보험금 부당삭감 (207백만원)	2013. 3. 27.~2014. 12. 30. 기간 중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55백만원 중 648백만원만 지급하고 207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10백만원	45건	-	207백만원
24	2016. 3. 2.	KB 손보	산출방법서 위반	플러스 메디컬 단체보험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과소산출	2013. 5. 9.~2015. 5. 9. 기간 중 5개사(보험계약자)와 9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택배원(차량운전)'에 대해 위험등급 3급이	27백만원	9건	-	22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아닌 위험이 적은 '음료 제조관련 기계 조작원' 등급인 2급을 적용하는 등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체 피보험자 24,370명 중 1,675명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보험료(270백만원)보다 22백만원 적게 산출된 보험료(248백만원)을 5개사에 제시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함				
25	2016. 3. 2.	현대 해상	산출방법서 위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보험료 부당산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산출방법서에 따라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적용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4. 4. 3.~2015. 4. 28. 기간 중 *** 등 4개사(보험계약자)와 체결한 5건의 '승강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 대해 요율서에 없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면서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와 협의한 보험요율을 임의로 사용하여 산출한 보험료(32백만원)를 ***등 4개사에 제시하고 보험계약 5건을 인수함	17백만원	5건	-	32백만원
				단체 상해보험		2013. 10. 1.~2014. 10. 1. 기간 중 ***와 2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11,547명)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요청대로 임의로 위험등급 1급을 일괄 적용한 결과,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을 위험등급 2급이 아닌 위험이 적은 1급		2건	-	100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으로 분류하는 등 피보험자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현대단체상해보험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잘못 적용하여, 정상보험료(2.5억원)보다 최대 1억원 적게 산출된 보험료(1.5억원)를 제시하고 보험계약 2건을 인수함				
26	2016. 7. 14.	동부화재	약관 위반	-	보험금 부당삭감 (914백만원)	2012. 11. 16.~2015. 5. 31.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1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2,361백만원)보다 914백만원을 과소지급함 (1)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요청한 담당 주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 과소지급(14건, 650백만원) (2)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과소지급(6건, 160백만원) (3)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과소지급(94건, 94백만원) (4)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과소지급(42건, 10백만원)	34백만원	156건	-	914백만원
			산출방법서 위반	단체상해 보험	보험료 과소책정	2012. 12. 31.~2015. 2. 11. 기간 중 **** 등 8개 사(보험계약자)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92백만원	13건	-	310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체결하면서, 전체 피보험자 51,831명 중 17,146명의 위험등급을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적용하여 정상보험료(50.2억원)보다 3.1억원 적게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음				
27	2016. 7. 26.	농협 손보	약관 위반	-	보험금 부당삭감 (243백만원)	2012. 12. 20.~2015. 8. 24. 기간 중 84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558백만원)보다 243백만원을 과소지급함 (1) 후유장해 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요청한 담당 주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 과소지급(47건, 186백만원) (2)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임에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삭감지급에 관한 정당한 자료 또는 근거 없이 보험금 과소지급(6건, 41백만원) (3) 골절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골절진단비 또는 골절수술비 특약 정액보험금 미지급(31건, 16백만원)	9백만원	84건	-	243백만원
			산출방법서 위반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험료 과소책정	영업배상책임보험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2013. 8. 4. ***과 주유소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시 기초서류와 다르게 보험료를 산출하여 정상보험료(13.9백만원)보다 5.4백만원 적은 8.5백만원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미부과 [177)]	1건	-	5.4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28	2016. 10. 13.	라이나 생명	사업방법서 위반/ 약관 위반	-	부당해지	2012. 3. 12.~2014. 8. 8.기간 중 기초서류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26건의 보험계약(연간수입보험료: 8백만원)을 해지함 (1) 인수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 전부 해지를 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전부해지(16건)(ex. 위암진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인수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내역인 불면증을 계약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처리) (2)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지(10건)	1백만원	26건	8백만원	-
29	2016. 11. 23.	DGB 생명	약관 위반	-	재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2011. 5. 19.~ 2014. 5. 27.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55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미부과 178)	6건	-	55백만원
30	2016. 11.23	PCA	약관 위반	-	재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2011. 2. 9.~2013. 10. 30.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을 청구한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1,095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7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3백만원	14건	-	1,095백만원
31	2016. 11. 23.	메트 라이프	약관 위반		재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2011. 4. 7.~2014. 5. 19.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6백만원	54건	-	3,428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54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3,428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32	2016. 11. 23.	신한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2011. 2. 9.~2014. 8. 29.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37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1,778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20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5백만원	37건	-	1,778백만원
33	2016. 11. 23.	처브라이프	약관 위반		재해사망 보험금미지급	2012. 4. 6.~2014. 10. 15.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495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6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1백만원	6건	-	495백만원
34	2016. 11. 23.	흥국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2011. 3. 10.~2014. 10. 20.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33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1,215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17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6백만원	33건	-	1,215백만원
35	2017. 5. 19.	교보생명	약관 위반	무배당사랑보험 등 4개상품	재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	428백만원 180)	454건	-	138억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주계약 무배당 재해사망 특약 등 10개 특약		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179)] 2011. 1. 24.~2016. 5. 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454건에 대하여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138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29억원등 총 167억원을 지급하지 않음				
36	2017. 5. 19.	삼성생명	약관 위반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 보험 등 10개 주계약 무배당 재해사망II 특약 등 15개 특약	재해사망보험금미지급	2011. 1. 24.~2016. 5. 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1,34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패사망보험금 527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07억원 등 총 635억원을 지급하지 않음	894백만원	1,342건	-	527억원
37	2017. 5. 19.	한화생명	약관 위반	무배당 베테랑 상해보험 등 9개 주계약	재해사망보험금미지급	2011. 1. 24.~2016. 5. 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315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120억원	395백만원	315건	-	120억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무배당 재해사망 보장특약 등 23개 특약		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8억원 등 총 158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38	2017. 9. 7.	삼성생명	약관 위반		이자지급업무 부적정	(1) 책임준비금에 대한 가산이자 미지급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 1. 24~2014. 12. 2. 기간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총 2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1,12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7,365백만원	22,847건		1,121백만원
						(2)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과소지급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1. 1. 24.~2014. 10. 31. 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된 총 150,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통보일'부터 '실제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예정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례 하향조정함으로써 총 170백만원의		150,310건		170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지연이자를 과소지급함				
					보험계약 부당해지	2012. 4. 4. ~ 2014. 9. 22. 기간 중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15건에 대하여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이 중 2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5건		-
					보험계약 특약 해지 부당거부	2011. 9. 14. ~ 2014. 1. 21.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9명) 주요성인병특약 34종, 총 49건의 특약(주계약 기준 9건)에 대해 해지를 요청하였고, 보험약관상 특약 소멸 전에는 언제든지 특약만 해지 가능함에도, 특약만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함으로써 특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업무처리		9건		-
					보험금 지급 안내업무 불철저	2011. 7. 14. ~ 2014. 12. 10. 기간 중 34,1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36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34,114건		-
39	2017. 10. 12.	흥국생명	약관 위반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금 부지급	2012. 5. 15. ~ 2014. 12. 30. 기간 중 기초서류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45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중 2건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입원치료비 총 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7백만원	45건	-	18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40	2017. 10. 19.	ABL 생명	약관 위반	무배당 랄랄라 교통안전 보험 등 5개 상품 주계약 무배당 재해사망 보장특약 등 6개 특약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2011. 1. 24.~2016. 5. 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36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159억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억원 등 총 203억원을 지급하지 않음	245백만원 [181)]	362건	-	159억원
41	2017. 10. 19	KDB 생명	약관 위반	무배당 파랑새존 보장보험 등2개 상품 주계약 무배당 재해사망 특약 등 4개 특약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 1. 24.~2015. 6. 26.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6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2,187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611백만원 등 총 2,7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13백만원	62건	-	2,187백만원
42	2017. 10. 19.	농협 생명	약관 위반	무배당 참사랑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피공제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공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2백만원	41건	-	1,729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교통안전 공제 등 2개 상품 주계약 세테크 연금공제 재해보장 특약약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2. 3. 6.~2014. 4. 16. 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살하여 공제수익자에 의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공제금이 청구된 총 41건에 대하여 공제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공제금 1,729백만원과 공제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70백만원 등 총 2,0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43	2017. 10. 19.	동부생명	약관 위반	무배당 뉴-가족안전상해보험 등 2개 상품 주계약, 무배당 가족사랑-재해사망특약 등 11개 특약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 1. 24.~2016. 4. 6.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67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3,887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274백만원 등 총 5,16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19백만원	67건	-	3,887백만원
44	2017. 10. 19.	엠지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93백만원)	2013. 5. 8.~2016. 8. 23. 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골절 등의 상해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면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93백만원을 과소지급함	13백만원	79건	-	93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45	2017. 10. 19.	현대 라이프	약관 위반	무배당 푸른 교통안전 보험 주계약 무배당 재해사망 특약 등 8개 특약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 1. 24. ~ 2016. 3. 14.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82건에 대하여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3,272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27백만원 등 총 4,1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20백만원	82건	-	3,272백만원
46	2018. 2. 6.	교보 생명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미청구확약서 부당징구)	2011. 8. 5.~2014. 3. 24. 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주파 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38백만원(10건)을 부지급하고, 21백만원(9건)을 과소지급하였으며,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징구(76건)함	413백만원 [182)]	95건		59백만원
					책임준비금 이자지급업무 부적정	2011. 11. 14.~ 2015. 11. 30. 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가산이자 9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5,162건		96백만원
					보험료 납입면제업무 부적정	2011. 11. 18. ~ 2015. 7. 7. 기간 중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처리를 누락하여 18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수령함		64건		183백만원
					사고분할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그 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 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181건		358백만원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대상[1)]	상품	세부유형	위반한 기초서류 내용	과징금	위반건수	수입보험료	위반금액
					부적정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하여 2014. 8. 5.~2015. 10. 30. 기간 중 18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58백만원을 과소지급함				

170) 괄호 안은 법 시행 이후 위반건수 및 관련 보험계약 연간수입보험료임. 이하 같음

171) 배서시스템 변경

172) 전산시스템 검증 소홀

173) 보험료 산출 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과 동일 보험년도 중의 정기예금금리+1%(XX보험은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율에 전 보험년도 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곱한 금액(확정배당준비금)을 매년 정기예금금리로 부리하여 적립된 금액과 확정배당준비금 적립액

174)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영수한 점은 이해가 되나,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과소"영수된 점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관련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175)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을 과다·과소 계상한 경우는 209조1항 10의2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동시에 산출방법서 위반이 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176) 81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 것으로 보이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은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임

177) 조정 후 과징금이 100만원 이하

178) 조정 후 과징금이 100만원 이하

179) 이하 괄호 내용은 사례 35, 36, 37과 중복되는 내용임

180) 위 과징금 금액은 기초서류 위반 및 이와 관련된 설명의무(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임.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이하 사례 35, 36, 37 모두 동일함

181) 위 과징금 금액은 기초서류 위반 및 이와 관련된 설명의무(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임.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182) 위 과징금 금액은 모집광고 관련 위반행위와 기초서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임.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연구보고서(구)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4.11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300,000원	₩150,000원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080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5 / cbyun@kiri.or.kr)

저 자 약 력

황 현 아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상법)
사법연수원(36기) 수료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
(E-mail : hahwang@kiri.or.kr)

백 영 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연수원(31기) 수료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센터장
(E-mail : pyh@kiri.or.kr)

권 오 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E-mail : katie5022@kiri.or.kr)

연구보고서 2018-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발행일	2018년 8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87-9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